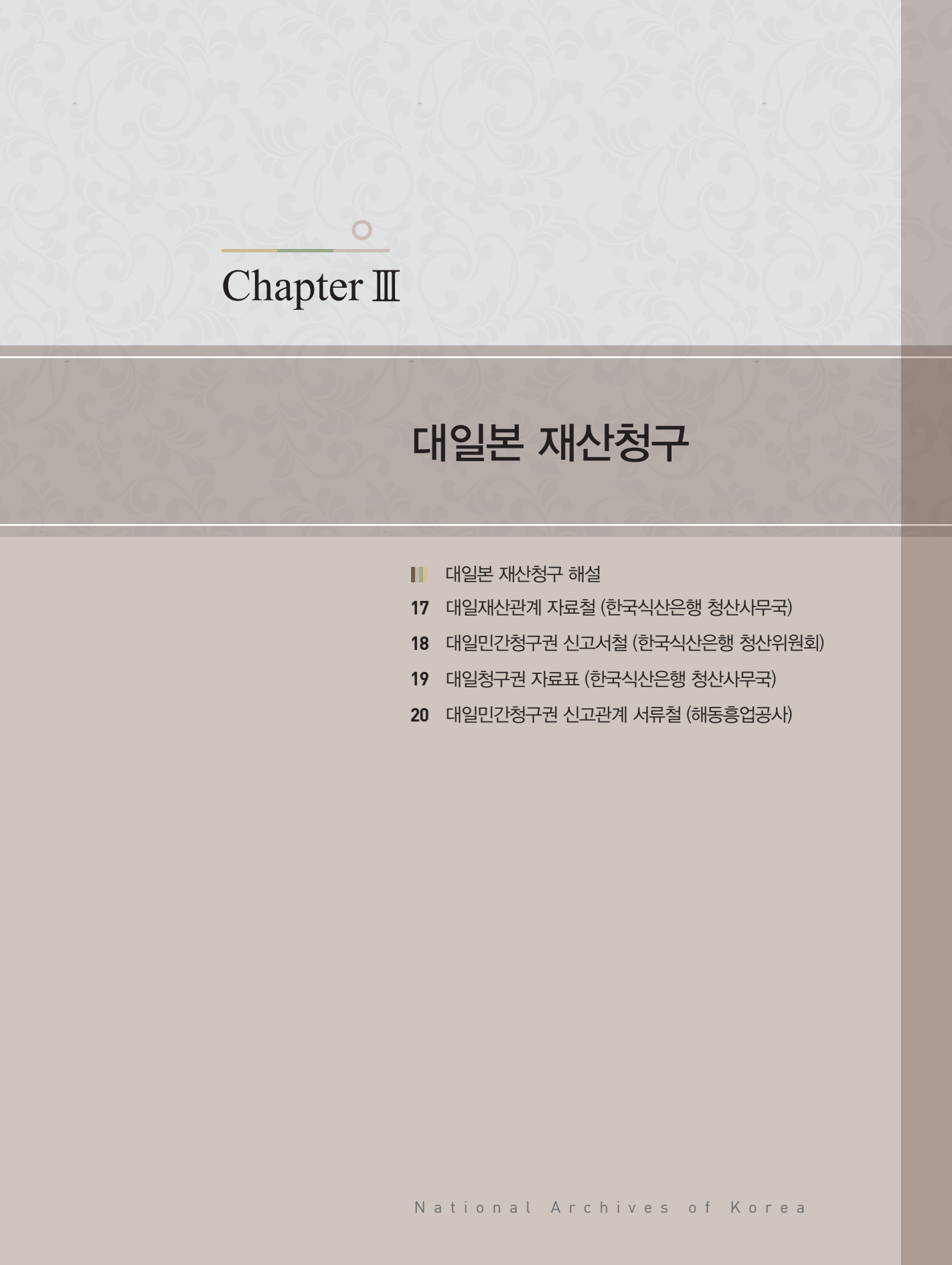




Chapter III

대일본 재산청구

- 대일본 재산청구 해설
- 17 대일재산관계 자료철 (한국식산은행 청산사무국)
- 18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서철 (한국식산은행 청산위원회)
- 19 대일청구권 자료표 (한국식산은행 청산사무국)
- 20 대일민간청구권 신고관계 서류철 (해동흥업공사)

대일본 재산청구 해설

일제강점기 일본(정부, 민간)이 조선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 이른바 ‘귀속재산’이 해방 후 미군정의 접수와 관리를 거쳐 한국정부에 이관되고, 이후 국유, 민간불하 과정을 거쳐 청산되기까지는 반세기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실제 대부분의 귀속재산은 1949년 「귀속재산처리법」의 제정을 토대로 1950년대에 일부 주요 기업체 및 법인의 국유를 제외한 대부분이 민간에 불하되는 것을 통해 처리되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청산에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은 귀속재산 속에 포함되어 있던 국내 법인 및 민간의 재산에 대한 보상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는 등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내귀속법인이나 개인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각종 채권, 일본 소재 재산의 보상 역시 그 가운데 하나였다. ‘대일민간청구권’²⁾이라고 불린 이 재산은 1965년 6월 22일 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를 위한 기본 조약과 청구권 협정 등 4개의 부속협정을 정식으로 조인하면서 가시화되었다.

특히 청구권 협정의 체결로 한국정부가 일본국에 대하여 모든 피해를 일괄 보상·청구하게 됨에 따라 국내 민간(법인·개인)이 일본 정부와 민간(법인·개인)에 가지고 있던 개별적 청구권, 즉 대일 민간청구권은 소멸되었다. 대신 한국정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무상 3억불 등의 청구권 자금을 가지고 보상법을 제정하여 국내 민간의 대일 민간청구권을 보상하게 되었다.

여기서 소개하는 「대일본 재산청구」 관련 문서들은 대일 민간청구권과 관련하여 1966년 보상법 제정논의부터 시작하여 1975년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소개할 자료는 총 4개의 문서철로 〈대일재산관계 자료철〉,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서철〉, 〈대일청구권 자료표〉, 〈대일민간청구권 신고관계 서류철〉이다. 모두 조선식산은행 및 그

1) 귀속재산 처리와 관련해서는 김기원, 「미군정의 경제정책에 관한 연구」, 『論文集』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86; 「미군정기의 경제구조—귀속기업체의 처리와 노동자 자주관리운동을 중심으로—」, 푸른산, 1990 및 공제옥, 「1950년대 한국의 자본가 연구」, 백산서당, 1993 참조.

2) ‘대일 민간청구권’의 범위는 크게 재산청구권과 피해보상권으로 나눌 수 있다. 재산청구권은 국내 민간(법인과 개인)이 일본 정부와 민간(법인·개인)에 가지고 있던 각종 채권, 일본 소재 재산(동산, 부동산), 보유 일본화폐, 금융기관에 예입된 예금 등을 의미하고 피해보상권은 일제말 강제 징병·징용된 사람들에게 대한 피해보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관련해서는 1971년 1월 19일자로 제정된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2287호) 참조.

때문이다.⁴⁾ 따라서 최대 주주인 정부가 주주총회를 열어 법인 해산을 선포하고 법인 재산에 대한 청산과정을 거쳐 정리한 재산을 정부와 민간이 소유한 지분에 의거하여 나누면 최종적으로 청산이 종결되는 것이었다. 조선식산은행의 주식 지분구조는 【표 1】과 같은데, 일본 정부 및 민간 소유였던 귀속 주식을 기본으로 한 정부 소유 주식산은행 전체 주식의 약 80% 정도였고, 법인과 개인을 포함한 민간 소유 지분은 20%였다.

【표 1】 조선식산은행 주식소유 구조

구분	1931년					1941년		
	주주수	구주	신주	계	비율(%)	개수	비율(%)	비고
정부	1	473,684	465,041	938,725	78.2	93,881	76.61	
법인	22	110,977	121,558	232,535	19.4	23,449	19.14	
단체	24	1,097	1,037	2,134	0.2	404	0.33	
개인	282	14,242	12,364	26,606	2.2	4,809	3.92	북한 주주 48명
계	329	600,000	600,000	1,200,000	100	122,543	100	26

〈자료〉한국식산은행 청산사무국, 『대일재산관계자료철』, 1966, (DA0423463)

- 4) 일본의 해외재산 처리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던 미국의 최초 입장은 그 재산을 몰수하여 연합국의 전쟁배상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원칙은 終戰 이전에 이미 정해놓고 있었던 것으로, 終戰과 함께 미국은 해외에 있는 일본인 재산을 점령지 미군이 조사하여 연합국의 처리 결정이 있을 때까지 '관리·보존'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남한의 점령을 담당할 주한미군정사령관 하지(John R. Hodge)에게도 진주 며칠 전인 1945년 9월 1일 동일한 명령이 하달되었다. 9월 8일 남한에 진주한 미군정은 9월 25일 패전국 소유 재산의 동결과 이전제한을 규정한 법령 제2호(Concerning Property Transfers)를 발표하여 8월 9일 현재 남한 소재 일본 재산의 미군정 관리를 선언하였다. 법령 제2호를 통한 미군정의 일본재산 관리 방침의 핵심내용은 일본 국공유 재산의 경우 미군정이 접수하여 관리하고, 일본인 사유재산의 경우 '일본인의 기존 소유권을 인정하여 매매를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사유재산의 소유권 인정은 국제법(헤이그육전법규)상의 규정, 즉 '적국의 재산이라도 사유재산의 경우 그 소유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의식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군정은 자유매매를 인정하지만 그 거래대금을 조선은행이 강제로 인치시켜 관리한다고 하였다. 이 조치는 국제법을 준수하면서도 일본인재산을 몰수하여 연합국 전쟁배상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을 고수하려는 노력으로 미군정의 딜레마가 드러나는 부문이었다. 그러나 법령 2호에 근거한 미군정의 귀속재산 처리원칙은 곧 붕괴되었다. 일본인 사유재산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한국 내부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일본 재산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그것이 공유재산이든 사유재산이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의 소유라는 것이었다. 해방공간 치열하게 대립하던 좌우의 정치세력도 일본인 재산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었다. 따라서 미국이 일본 재산을 몰수하여 연합국의 전쟁배상용으로 사용한다는 방침과 일본인 사유재산의 매매허가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당시 국내 여론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더욱이 38도선 이북을 점령한 소련군정은 미군정과 달리 일본 또는 일본인 소유 재산을 몰수하여 무상 분배 내지 국유화하는 작업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일본 재산처리 방침은 더욱 큰 발발을 불러일으켰다. 1945년 12월 미국은 기존 법령 2호의 방침을 변경하여 한국내 일본 공·사유재산 전부를 주한미군정에 '귀속'시키고, 이후 미군정 사령관의 책임 하에 임대 및 매각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삼부조정위원회(SWNCC)의 지령 265 Series(Disposal of Japanese Property in Korea)에 기반 한 미군정 법령 33호(Vesting Title to Japanese Property within Korea)에 의거한 것 이었다.

일방적으로 조선식산은행의 자산을 양도 받아 한국산업은행을 발족시킨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식산은행이라는 구 귀속법인 재산의 한국산업은행 양도, 잔여재산의 청산·정리를 통해 얻어지는 청산소득으로 민간 지분 20%에 대한 보상을 할 책임이 있었고, 식산은행의 민간주주 역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문제는 좀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는 민간주주 측과 정반대의 입장인 정부와의 사이에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대일민간청구권 문제는 그 대립의 정점에 있었다.

조선식산은행의 청산작업은 1954년 4월 8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식산은행의 해산과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 청산에 들어가기로 의결한 이후 한 달 뒤인 5월 31일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1954년 4월 1일 기준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을 승인함으로써 이를 기준으로 본격화되었다. 청산 절차는 식산은행의 토지, 건물, 동산 등의 주요 자산은 매각 절차를 통해 한국산업은행에 양도하고 기타 자산 및 부채는 계정상 양도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청산 소득 4억 9,700만원은 1차적으로 정부와 민간 소유 주식의 지분 비율에 의거하여 중간 분배하였다. 1961년부터 1965년까지 이루어진 분배액은 정부 3억 8,800만원, 민간 1억 900만원이었다.⁵⁾

그러나 식산은행의 청산과정은 이후에도 장기간 지속되었고, 최종적으로 청산이 종결된 것은 1981년 10월이었다. 청산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식산은행이 보유했던 경춘철도주식회사(京春鐵道株式會社) 주식에 대한 보상금 청구소송(20만주 중 3만주 보유)이 1963년 제기되어 대법원 확정판결이 1979년에서야 나왔다는 것과 함께, 대일민간청구권 보상 문제 역시 1981년 정부가 식산은행의 민간 소유 주식을 액면가의 30배로 매입하는 것이 결정될 때까지 미해결 상태였기 때문이다.⁶⁾

우선 경춘철도 관련 소송은 식산은행 청산위원회가 정부를 상대로 동 철도의 식산은행 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청산위원회의 대표 청산인으로 당시 한국산업은행 총재였던 박○○(朴○○) 명의의 소장에서 식산은행은 경춘철도를 귀속재산으로 국유화한 정부가 일제시기 아직 사설철도였던 당시의 총 주식 20만주 중 식산은행 주식 지분

5) 재정경제부 연합청산위원회, 『국가귀속 청산법인 청산자료집』, 2000, 504쪽.

6) 재정경제부 연합청산위원회, 『국가귀속 청산법인 청산자료집』, 2000, 505~506쪽.

인 3만주(15%)에 대한 보상으로 약 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억여원의 근거는 경춘철도의 재산이 1962년 3월 서울지방법원 시가 산정액 32억 4,500만원에 대한 식산은행의 지분 15%를 의미했다.

식산은행 청산위원회는 정부가 국유화한 사유재산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군정 법령폐기로 인해 관계기관이 유권해석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면서 지난 16년간이나 보상을 미뤘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1946년 5월 미군정은 국내 사철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대신 군정 법령 75호를 통해 기존 사철 내의 민간 소유 주식지분에 대한 보상을 규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식산은행의 청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청산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결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게 된 것이었다.

4억여원의 배상 소송은 인지대만 200만원에 이를 정도로 당시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민사 소송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⁷⁾ 그러나 소송은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대법원까지 이어져 1979년 확정판결이 내려졌는데, 결론적으로 패소 판결이었다. 그 판결요지는 ‘① 보상금 청구권은 유효하게 존속하나 보상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보상청구권은 아직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식산은행의 유효한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부장관의 보상금 결정 태만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으로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었다.⁸⁾ 결국 경춘철도의 식산은행 소유 주식에 대한 보상은 장기간의 정부 상대 소송에도 불구하고 미해결 상태를 지속하게 되었다.

대일민간청구권 역시 비슷한 경로를 보였다. 1965년 한일협정 이후 보상법 마련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나, 보상 재산의 범위와 보상 비율을 놓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민간청구권자 간의 대립으로 장기간 표류하였다. 식산은행 역시 민간주주들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가 조직되는 등 활발하게 대응하였다. 결국 1971년 1월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2287호로 제정되고, 이를 통해 신고 된 재산에 대한 보상법으로 1974년 12월 법률 제2685호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75년 7월부터 보상이 실시

7) 『동아일보』 1963.9.27

8) 재정경제부 연합청산위원회, 『국가귀속 청산법인 청산자료집』, 2000, 505~506쪽.

되었다. 보상 기준은 신고된 액수의 30배를 보상한다는 것이었다. 대일민간청구권협회 등의 민간청구권자 단체는 해방 후 실질적인 구매가치 변화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보상비율을 1엔당 500배 이상 1,000배의 비율로 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식산은행은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식산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일 채권 7억 1,000만엔 중 민간주주 지분액 1억 5,400만엔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은 식산은행의 대일 채권에 대한 보상을 제외하였다.(법률 제2조) 동 보상법에서는 식산은행 외에도 조흥은행, 대한금융조합연합회, 구 신탁재산처리위원회,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그리고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금융기관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민간청구권자들의 전국 조직인 대일민간청구권협회의 주장이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⁹⁾ 후술하겠지만, 전체 신고금액 중 금융기관이 신고한 금액이 거의 90%에 이르렀다는 점이 보상에 소극적이었던 정부의 입장에서 식민지 수탈기관에 대한 보상 보다는 개인청구권에 치중하라는 민간청구권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통해 명분을 얻고, 여기에 근거하여 이들 금융기관을 보상에서 제외하는 정책 결과로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이로써 1966년 이후 10년 가까이 끌어온 식산은행의 대일민간청구권은 ‘보상법’의 법적 틀 속에서는 최종적으로 보상되지 않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경춘철도와 대일민간청구권 등으로 장기간 청산이 종결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자 정부와 식산은행 청산위원회는 청산종결을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민간소유 주식을 정부가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의 예에 준하여 1주당 액면가의 30배로 환산한 금액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청산을 종결하기로 하였다.

1981년 정부가 민간주주의 지분을 대일민간청구권 보상 예에 준하여 1주 액면가의 30배로 매수하는 형식으로 보상함으로써 식산은행의 청산종결이 최종적으로 완료되었다. 대신 대일민간청구권 대상 재산이었던 구 일본은행권 및 국채, 사채 등의 각 종 채권은 정부에 현물 증여되었다.

9) 『동아일보』 1974.8.28

Ⅱ. 보상법 제정 과정과 식산은행청산위원회의 대응

1965년 12월 18일자로 ‘청구권 협정’이 발효되었다. 협정의 제2조 1항은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명시하였다.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불의 자금을 받는 대신 대일 재산청구권은 완전히 소멸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정당한 대일청구권 보유자(민간)에게 응분의 보상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정부는 협정 발효와 함께 서둘러 경제기획원을 주무부서로 하여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관리법—을 마련하여 12월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정부안은 우선 일본 자금이 들어오기 전에 국내의 자금운용과 관련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대일 민간청구권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자 당시 야당인 민중당은 민간청구권에 대한 보상 규정을 명기한 같은 이름의 법안을 이듬해인 1966년 1월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관리법은 국회에서의 절충과정을 통해 야당이 제안한 대로 제5조에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1945년 8월 15일 이전까지의 일본국에 대한 민간 청구권은 이 법에서 정하는 청구권 자금 중에서 보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기한 법안이 마련되어 국회를 통과, 2월 19일 공포되었다. 아울러 관리법은 청구권 자금을 통해 보상하는 민간청구권과 관련한 기준, 종류, 한도 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보상법 마련의 근거를 제공했다.¹⁰⁾

‘보상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은 ‘관리법’ 제정 직전에 이미 민중당에 의해 2월 15일 「독립유공자 피징용 사상자 및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여기에 대하여 정부는 약 한달 뒤인 3월 22일 「독립유공자 및 대일민간청구권 보상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 여야당은 민중당 제출안과 정부 제출안을 가지고 논의한 결과 양 법률안 모두를 폐기하고 정부안을 기준으로 「독립유공자사업 기금법」과 「대

10)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1966.02.19, 시행일 1966.02.19, 법률 제1741호

일민간청구권 보상신고에 관한 법률」로 분리하여 심의하기로 합의했다. 「독립유공자사업 기금법」은 1967년 3월 순조롭게 제정되었으나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둘러싸고는 정부 측의 소극적인 태도에다가 보상 재원과 보상 대상에 관한 국회내 여야간의 입장차가 심하여 난항을 거듭했다. 정부가 보상 방침과 관련하여 청구권 자금 가운데 2,200만 달러 정도를 보상 재원으로 하기로 하고, 보상비율 기준을 마련하는데는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지 않고 당시 환율인 ‘360엔 : 272원 : 1달러’의 비율로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자 야당에서는 무상자금 가운데 10%에도 미치지 않는 보상재원에 대해 비판을 가했으며, 게다가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지 않은 보상은 결과적으로 청구권자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라는 민간청구권자들의 항의 주장을 근거로하여 정부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국회에서 여야 간의 의견 대립이 첨예화 되면서 결국 보상법에 대한 심의는 중단되고 6대 국회가 회기를 마치고 해산되면서 보상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민간청구권자들의 보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7대 국회 총선에서 여당 공화당은 선거공약을 통해 재집권하면 곧 보상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총선에서 승리한 후 보상법 제정을 서두르지 않았다. 이에 민간청구권자들의 반발과 보상법 제정요구가 빈발하자 1970년 12월에 이르러서야 정부는 보상을 위한 정확한 증거 자료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 이하 신고법 — 을 국회에 상정했다. 청구권 자금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 경제개발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판단한 정부가 청구권협정 체결 후 5년이 지나서야 민간청구권에 대한 보상을 현실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다.¹¹⁾

대일 재산청구 관련 4건의 문서철 중 <대일재산관계 자료철>(DA0423463)은 청구권 협약의 발효 이후 보상법안이 좌절되고, 재차 보상법안 제정을 촉구하던 1966년 이후 식산은행의 대응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이다. 보상 준비를 위한 식산은행청산위원회의 대일재산 조사과정, 식산은행 민간주주들의 보상대책위원회 결성과 보상법 제정에 대한 요구사항 개진의 현황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당시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보상법안의 내용도 첨부되어 있다.

11) 보상법 제정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영호, 「한국정부의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 과정」, 『한일민족문제연구』8, 2005 참조.



【그림 2】민간청구권자
협의회 회보(DA0423463)

청산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과 공조하여 보상받을 대일 재산의 기준 등을 정하고, 현황을 조사하였는데, 조사 결과로 나온 조선식산은행의 대일 재산은 보유한 일본 화폐, 각종 유가증권, 일본 은행 대리업무 관련 거래 등을 합쳐 약 18억엔(해방 당시 가격)이었다. 식산은행 민간주주들은 여타 민간청구권자들과 동일하게 보상 대상 재산 범위 규정의 확대와 보상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보상대책 위원회는 건의서까지 작성하였다.

한편 동 문서철은 생산년도를 1966년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1968년 민간청구권자 전국 조직인 ‘민간청구권자협의회’의 1968년까지의 활동 관련 자료도 첨부하고 있다. 6대 국회에서 보상법안 제정이 실패하는 과정과 이후 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는 민간청구권자들의 조직적 활동을 확인할 수 있어서 1970년 정부의 ‘신고법’ 국회 상정까지의 기간 동안 관련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다.

Ⅲ. 대일 재산 신고와 보상 과정

대일 재산청구 관련 4건의 문서철 중 <대일재산관계 자료철>(DA0423463)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의 문서철은 1970년대 전반에 이루어진 대일 재산 신고 및 보상에 관련된 문서들이다. 우선 <대일청구권 자료표>(DA0424710)는 보상과 관련해서 제정되었던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서철>(DA0424709)과 <대일민간청구권 신고관계 서류철>(DA0425703)은 각각 식산은행과 식산은행의 자회사였던 해동흥업의 대일 재산에 대한 신고 및 이후 보상관계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일 민간청구권에 대한 보상법 제정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장기간 지지부진하다가 1971년 1월 보상을 위한 준비 법안으로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228호로 제정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1966년 2월 제정된 ‘관리법’이 대일 민간

청구권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이래 약 5년 만에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을 위한 정확한 증거와 자료 수집, 그리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고법'이 제정된 것이었다. 다만 '신고법'은 어디까지나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법률이었기 때문에 보상을 언제 어떻게 실시하겠다는 규정은 담고 있지 않았다. '신고법' 법률안을 심의한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역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신고법 제정 후 보상 실시를 약속하는 보상법 제정 시기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위원회의 심사결론에서도 실제 보상을 위한 보상법 제정과 그 실시 기한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신고법'에는 어디에도 보상에 관한 문구가 규정되지 않았다.¹²⁾

'신고법' 제2조에는 신고대상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1. 구 군정법령 제57호 "일본은행권·대만은행권의 예입"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입한 예입금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행권 및 일본국 정부의 보조화폐
2.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서 현물이 있는 다음의 유가증권
 - (가) 일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
 - (나) 일본 저축권
 - (다) 일본국의 지방채
 - (라) 일본국에 본점(본사와 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 일본국의 공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사채와 일본국 정부가 보증한 사채
3.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에 소재한 일본국 금융기관에 예입된 예금
4.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에 소재한 일본국 금융기관에 일본국 이외로부터 송금되어온 해외송금. 다만, 환거래 결재분에 한하며 일본은행권 이외의 일본계 통화 및 일본군표는 제외한다.
5. 1945년 8월 15일부터 1947년 8월 14일까지 일본국으로부터 귀국한 대한민국 국민이 귀국할 때에 일본국 정부기관에 기탁한 기탁금
6.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의 생명보험회사에 대한민국 또는 일본국에서 납입한 보험료와 수취하게 된 보험금
7.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법인의 일본국에 있던 지점의 재산정리로 인하여 생긴 잉여금 중 대한민국 국민인 주주의 지분

12) 「제75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0호」(국회사무처, 1970.12.16), 9~10쪽; 최영호, 앞의 논문, 238~239쪽

8. 일본국에서 예입 또는 납입한 일본국 정부에 대한 다음의 채권

- (가) 우편저금 · 진체저금 및 우편 위채
- (나) 간이생명보험 및 우편연금의 납입금

9. 일본국에 의하여 군인 · 군속 또는 노무자로 소집 또는 징용되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망한 자(이하 "피징용사망자"라 한다)

1~8항은 재산청구권을 규정한 것이고, 9항은 강제 징용 등을 통한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권을 규정한 것이었다. 아울러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일본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고 하여 재일동포를 신고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리고 청구권 보유로 인한 일체의 과실과 법인이 보유하는 청구권 가운데 정부의 지분에 해당하는 것도 신고대상에서 제외시켰다. 9항의 피징용 사망자의 기준과 사망자 유족의 범위는 1971년 4월에 제정된 시행령에 규정되었다. 시행령 제3조에서 피징용 사망자의 기준으로 1. 군인 군속으로서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2. 노무자로서 노무에 종사 중 사망한 자, 3. 군인 군속 또는 노무자로서 전투 직무수행 또는 노무종사 중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 규정되었으며, 제4조에는 유족의 범위로 처, 자녀, 부모, 성년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게 된 조부모로 규정되었다.

신고기간은 1971년 5월 21일부터 1972년 3월 20일까지 10개월로 했다. 그리고 신고업무 취급기관으로 서울지역에는 재무부 산하의 「대일민간청구권 신고관리 사무국」이 담당하게 하였으며,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세무서가 이를 담당하였다. 정부는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서 1971년 4월 17일 신문, 방송 등 언론을 통하여 청구권 신고에 관한 공고와 홍보 활동을 전개했으며, 1972년 3월 20일의 마감일에 즈음해서는 몰려드는 신고자들에게 야간 통행증을 발행하여 신고 누락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 증거 자료가 미비할 경우에는 일단 가접수를 허가하고 미비 서류를 보완할 시간을 주는 조치도 취했다. 그러나 정보통신 설비가 미비했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신문 공고 위주의 신고 유인책은 민간청구권자들에게 충분하게 전달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문에 지속적으로 공고하지 않고 일과성으로 공고한 것도 전달 효과에서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피징용 사망자 유가족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대중언론 매체보급이 적은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고, 문맹률이 높아서 이러한 정보 인지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 지방거주자의 경우 도회지에

소재한 세무서에 출입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각 지역세무서가 적극적으로 해당 관할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신고를 독려하지 않는 이상 신고접수 안내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0개월이라는 신고 기간도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에는 결코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다가 ‘신고법’에 10개월간의 신고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못 박은 것은 법정기간 동안에 신고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제할 길을 막아버린 매우 가혹한 입법조치였다. 또한 확실한 증거서류를 구비한 신고만을 접수한 까닭에 청구권 자이면서도 월남 및 한국전쟁 등으로 증거서류를 소실한 사람이나 피징용 사망자 가운데 호적 기록이 불분명한 사람들은 신고 접수에서 제외당하고 말았다. 이는 정부가 과거 식민지 지배로 인한 피해자들의 실태를 철저하게 조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단기 일에 대충 조사를 마무리하려는 태도를 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¹³⁾

어쨌든 10개월간에 걸친 신고접수를 한 결과는 재산관계 신고건수 13만 1,033건, 인명관계(사망자) 신고건수 1만 1,787건이었고, 이들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수리된 건 수는 재산관계 9만 9,537건, 인명관계 8,910건이었다. 접수율은 약 76% 수준으로 재산관계와 인명관계가 비슷한 접수율을 보였지만, 인명관계의 탈락율이 약간 높았다. 이를 정리하면【표 2】와 같다.

【표 2】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접수 결과

구분		신고인수(명)	신고건수(건)	신고금액(천엔)	비고
신청	재산관계	97,753	131,033	1,636,736	
	인명관계	11,787	11,787	—	
	합계	109,540	142,820	1,636,736	
신고거부	재산관계	3,339	31,496	10,423	
	인명관계	2,877	2,877	—	
	합계	6,216	34,373	10,423	
신고액	재산관계	94,414	99,537	1,626,313	일본정부 조회 및 재심사 결과분도 포함
	인명관계	8,910	8,910	—	
	합계	103,324	108,447	1,626,313	

〈출처〉 최영호, 앞의 논문, 242쪽.

13) 최영호, 앞의 논문, 241~242쪽.

대일 민간청구권 중 재산관계 신고 경향을 보면 대부분 소액 신고였다. 즉 전체 신고건수 중 100엔 이하의 소액 신고 건수가 7만 306건으로 총 신고 건수의 54%를 차지했다. 반면 이들의 신고 금액은 220만 1,000엔으로, 총 신고금액 16억 3,674만엔의 불과 0.13%에 지나지 않았다. 신고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식산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신청액으로 전체 신고액의 88%인 14억 3,635만엔이었다. 식산은행의 신고액은 1억 5,479만엔이었다. 식산은행이 가지고 있던 대일 재산 총액 7억 1,000만엔 중 민간주주의 지분 22%를 신고한 것인데, 그 내역을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식산은행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 내역표

(단위 : 엔)

종별		대일 재산 금액	신고금액	신고일자
유가증권	국채	18,263,468	3,981,436	1971.12.16
	사채	252,043	54,945	
	소계	18,515,511	4,036,381	
일본은행권, 보조화폐		28,450	6,202	1971.12.16
재일 재산청산 잉여금		691,491,738	150,745,198	1972.3.14
합계		710,035,699	154,787,782	

〈출처〉 한국식산은행청산위원회,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 내역표」,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서철』, 1971, (DA0424709)

식산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신청 액수가 전체의 90%에 육박했던 상황은 가뜩이나 보상에 소극적이었던 정부로 하여금 이들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적 고려를 하게 했다. 앞서 언급했지만 ‘민간청구권자협의회’도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보상에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입장은 보상법에 반영되어 관철되었다.

한편 인명관계 신고와 관련해서는 8,910명이라는 신고자 숫자는 지나치게 적은 것이었다. 과거 한일 회담에서 정부는 사망자 추정 숫자로 7만 7,603명을 일본측에 제시했었다. 결국 인명관계 신고 숫자는 정부의 민간인 피해자의 전후 보상이 극히 불완전한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정부는 ‘신고법’에 의해 신고가 완료되기도 보상의 실행에는 다시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1974년 12월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을 법률 제2685호로 제정하여

1975년 7월부터 보상을 실시했다. 시간이 걸린 이유와 관련해서 정부는 신고권자의 적격성, 신고 금액의 적절성, 증거 서류와 이중 신고 여부의 확인, 국내에서 증거 확인이 곤란한 신고분에 대한 일본 정부 조회 등을 이유로 들었다.

‘보상법’은 ‘신고법’에 의해 신고된 재산에 대하여 정부가 심사·사정을 거쳐 보상 대상 재산의 금액을 확정하고, 확정된 금액의 30배를 원화로 지급하는 것이었다. 신고 재산이 해방 당시 일본 엔화로 표기된 것이기 때문에 1엔당 30원, 다시 말해 대일 재산 엔화 액수의 30배에 해당하는 원화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했다. 지불 방법은 일정 액수까지는 현금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청구권보상증권으로 지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식산은행을 포함하여 신고액의 90% 가까이를 차지했던 금융기관 민간주주에 대한 보상은 예상대로 제외되었다.

‘보상법’의 주요 골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보상 대상을 민간청구권 신고 수리가 결정된 것으로 한정하고, 금융기관과 현존하지 않는 법인 등이 신고한 금액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둘째, 보상금 지급 방법으로서 현금과 청구권 보상증권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징용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과 재산권 가운데 30만원까지의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셋째, 보상금액 및 보상 비율로 재산권의 경우는 일본통화 1엔당 한국통화 30원의 비율로 보상하며, 피징용사망자의 경우는 1인당 30만원씩 일괄 보상하기로 하였다. 다만 100엔 미만의 재산청구권은 100엔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3,000원을 보상하기로 하였다. 보상비율의 경우 이전부터 민간청구권자 단체와 대립각을 세웠던 부문이었다. 민간청구권자의 전국단체인 대일민간청구권협회는 실질적인 구매가치 변화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보상비율을 최소한 1엔당 500배 이상, 1,000배의 비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가 제시한 30배의 근거는 해방 직후와 1974년 당시의 서울 미곡 도매가격, 금의 국제가격, 국내도매물가지수, 엔화의 대미환율을 고려한 것이었다.¹⁴⁾

‘보상법’에 따라 1975년 7월 1일부터 1977년 6월 30일까지 2년에 걸쳐서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졌다. 이 기간 동안 민간청구권자가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

14) 최영호, 앞의 논문, 245~246쪽.

는 청구권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실제 보상 시행 과정에서 그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신고법’에 의한 신고가 완료된 1972년 3월부터 보상이 시작된 1975년 7월까지 3년 4개월이 경과하는 사이에 지급청구에 필요한 구비 서류인 원증서를 분실한 청구권자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 재무부장관 직권으로 사실 여부를 조사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했고, 이러한 조사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이들에게는 당초 보상금 지급 마감일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국가채무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1977년 6월30일 이후에도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간청구권 보상금을 타는 방법은 재무부장관이 청구권 보상금의 지급액을 해당 청구권자 또는 청구권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청구권자가 통지서를 가지고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보상금 지급은 한국은행 및 지역별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졌는데, 청구권자가 보상금지급통지서와 청구권증서 원본을 제시하면 지급대장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현금 또는 보상증권을 지급했다.¹⁵⁾ 1978년 5월 시점에서 재무부가 집계한 민간청구권 보상결과를 정리하면 【표 4】와 같은데, 청구권자의 대일재산에 대한 보상액이 68억원, 그리고 징용 등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보상이 27억원으로 총 95억원 정도가 보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민간청구권 보상결과

(단위: 천원)

구분		신고수리	보상제외	지급결정	지급	청구권소멸
재산관계	건수	94,414	46	94,368	74,963	19,391
	보상액			6,846,645	6,616,951	227,215
인명관계	건수	8,910	0	8,910	8,552	352
	보상액			2,673,000	2,565,600	107,400
합계	건수	103,324	46	103,278	83,515	19,743
	보상액			9,519,645	9,182,551	334,615

〈출처〉 최영호, 앞의 논문, 248쪽.

15) 재무부, 『대일 민간청구권보상 종결보고서』, 1978, 76쪽; 최영호, 앞의 논문, 247쪽.

【표 2】의 1972년 신고 된 민간청구권 규모와 비교해 보면 건수는 금융기관의 제외에 따라 식산은행을 포함하여 총 46건이 제외되었을 뿐이지만, 이들이 신고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보상금액은 신고 금액 대비 대폭 축소되었다. 1972년 신고된 재산 관계 보상청구액은 16억 3,000만엔으로 이를 보상규정에 의거하여 환산하면 489억원(16억 3,000만엔×30)이지만, 실제 보상된 액수는 68억원으로 그 14%에 불과했다.

한편 인명관계 26억 7,300만원의 경우 일제말 징용으로 끌려갔다가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으로 1인당 30만원씩 계산한 것이었다. 피해자 단체는 1970년 대연각호텔 화재 사망자에게 700만원씩 지급된 것을 비롯하여 당시 일본의 교통사고 사망자 혹은 일본의 탄광 광부 사망자에게 2,000만엔이 지급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이에 준하는 보상을 요구했으며, 국가사정을 고려한다고 해도 1인당 1,000만원 이상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피징용 사망자(유족)에 대해 국군 사병 및 대간첩작전 지원 중 사망한 향토예비군에 준하여 그들에게 지급되는 일시금 30만원과 같은 금액을 보상 금액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정한 30만원의 금액은 과거 6차 한일회담에서 정부가 일본측에 제시한 1인당 1,650달러 — 당시 환율 400으로 환산하면 66만원 — 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다. 또 정부가 근거로 든 국군사병 및 대간첩작전에서 사망한 향토예비군의 경우도 일시금 30만원 외에 유족에게 연금으로 월 4,200원을 추가 지급했던 점에 비추어 보아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금액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¹⁶⁾

한일 협정 이후 정부가 책임지게 된 대일 민간청구권에 대한 보상은 장기간에 걸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970년대말에 이르러서야 일단락을 짓게 되었지만, 정부가 청구권자금을 경제개발에 우선적으로 돌림으로써 민간청구권 보상에 대해서는 극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것은 명확하다. 결국 민간청구권 보상은 불완전한 종결이었으며, ‘보상법’에서 제외된 식산은행을 포함한 귀속 금융기관의 민간주주에 대한 보상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었다.

식산은행을 포함한 귀속 금융기관의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은 제5공화국이 들어서서 이들에 대한 조속한 청산이 추진되면서 민간주주 보유 주식 자체를 정부가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의 예에 준하여 주식 액면가의 30배로 매입함으로써 매듭이 지어 졌다.

16) 최영호, 앞의 논문, 246쪽.

17

대일재산관계 자료철 (한국식산은행 청산사무국)

관리번호 : DA0423463

쪽 수 : 247

생산년도 : 1966년

생산기관 : 성업공사

이 문서철은 한일협정에 의거하여 일제강점기에 연원을 두는 국내 민간(법인·개인)의 일본 정부와 민간(법인·개인)에 대한 채권의 보상을 한국정부가 하게 됨에 따라 한국식산은행(조선식산은행의 해방 후 사명 변경) 청산사무국이 조선식산은행 소유 대일 재산(채권)의 규모를 파악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초기 입안되었던 보상법안 골자, 미군정 법령 33호 등의 이전 법령 및 협약, 조선식산은행 민간주주의 보상관련 동향 자료, 관련 신문기사 스크랩도 첨부되어 있다.

1965년 6월 22일 한일 양국간에 조인된 한일협정 중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서 국내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대일 재산 및 청구권 일체는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한일 양국 정부가 확인하는 대신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무상 3억불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일명 ‘청구권 협정’이라고 하는 동 협정에 의거하여 국내 민간이 보유하는 대일 재산청구권은 완전히 소멸되게 되었고, 3억불을 받은 정부가 대일 청구권을 보유한 민간(법인·개인)에게 보상 조치를 할 필요가 생겼다. 이 문서철은 이와 같은 정부의 대일 청구권 보상에 대응하여 한국식산은행 청산사무국이 조선식산은행의 대일 재산(채권)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주지하듯이 조선식산은행은 해방 후 한국식산은행으로 회사명을 변경하여 존속했고, 1954년 한국산업은행이 출범하면서 해산 절차를 밟게 되어 4월에 청산위원회가 조직되어 관련 업무를 진행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국식산은행 청산위원회는 조선식산은행 청산의 일환으로 은행이 보유한 대일 재산을 구체적으로 파악, 이에 대한 정부 보상금을 수령하여 정산처리를 마치려고 하였다.

아울러 정부 보상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식산은행 민간주주들의 관련 동향도 이 문서철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들은 식산은행의 대일재산 청구권은 일제 강점기 식산은행과 일본 민간(법인·개인) 간에 이루어진 민사상의 거래로 발생된 채권으로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하는 것이었지만, 1951년 9월 미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대일강화조약에 의거하여 한국이 보유하는 민사상의 채권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가 협정하여 해결·처리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식산은행이 거래 상대자인 일본 민간에 직접 청구할 수 없었고, 다만 정부 당국의 해결·처리 방식을 고대하고 있었다. 문서철은 다음과 같은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 〈민간인 보유 대일청구권관계 재산에 대한 보상조치안〉
- 〈대일재산 청구권에 대한 보상법(안) 개요〉
- 〈독립유공자 및 대일민간청구권 보상법안〉
- 〈독립유공자 및 대일민간청구권 보상법안(수정안)〉
- 〈대일민간청구권 보상법안 수정 조문의 내용〉
- 〈한국식산은행 보유 대일재산청구권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 〈식산은행 보유 대일재산 자료 정비에 관한 토의 기록〉
- 〈대일재산 청구자료〉
- 〈식산은행 보유 대일청구권 보상에 관한 식산은행 민간주주의 요청사항〉
- 〈민간주주 대표 9인 위원회의 경과기록〉
- 〈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법 제정에 관한 건의서〉
- 〈민간청구권자협의회 공개 질문서〉
- 〈민간청구권자협의회 회보 제1호(1968.10.3)〉
-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의 보충〉
- 〈군정법령 제33호〉
- 〈긴급금융조치법〉
- 〈관련 신문스크랩〉

I. 조선식산은행 대일 재산(채권) 현황 관련문서

이 문서철의 가장 중요한 문서로 <대일재산 청구자료>와 <식산은행 보유 대일재산 자료 정비에 관한 토의 기록>이 여기에 해당한다. 우선 <대일재산 청구자료>는 조선식산은행이 보유한 대일 재산 현황을 정리하였다. 각종 유가증권과 대부금, 환거래 등을 합친 것이 18억엔 규모였고, 그 외에 일본에 소재한 각종 소유 부동산이 있었다. 전체적인 실태를 정리하면 【표 5】 및 【표 6】과 같다.

【표 5】 조선식산은행 대일 재산(채권) 현황

(단위 : 엔)

종별	금액	내용 및 재산권의 근거
유가증권	568,643,086	일본지점에 보관했던 유가증권과 합산한 금액. 일본지점 보관 증권은 일본지점장 명의의 보관증이 있음.
대부금	1,182,369,215	일본인 명의 법인, 단체, 개인 앞의 대부금. 차주 발행어음, 저당 권설정계약서, 담보물건, 기타 관계장부를 보유하고 있고, 별도 차주별 명세도 보관하고 있음.
환거래	3,373,413	재일본 각 은행과의 환거래 상 발생한 것. 당행이 상대방 앞으로 청구하는 금액이며, 관계장부 및 서류를 보유(각 계좌수별 명세도 별도 보유)
三和은행 관계	39,827,526	미군정 명령에 의해 인수한 三和은행 경성지점의 인계차액. 三和은행 경성지점과의 인계서를 보유
일본권업은행 대리업무	21,924,486	일본권업은행 대리업무 취급상 발생한 청구금액. 일본권업은행과의 문서 및 대리업무 취급서류를 보유
기타	523,828	일본인에 대한 대부금 관계 입체금이며, 개인별 명세 별도 보유. 실물은 한국전쟁시 분실함
합계	1,816,661,554	

<주> 1. 원자료의 엔 이하 금액은 반올림하여 작성.
2. 금액은 해방 당시 엔화로 산정한 것임.

【표 6】 일본 소재 소유 부동산 명세

종별	면적(평)	소재지
대지	1,768	도쿄, 오사카, 미야기현(宮城県)
건물	350	도쿄, 오사카, 미야기현(宮城県)
임야	2,322	미야기현(宮城県)
火田	1,684	미야기현(宮城県)
동산	造付금고 1, 据付금고 5	도쿄지점 및 오사카지점

18억엔의 대일 재산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물론 대출금과 인수·출자를 통해 보유하게 된 주식 등의 각종 유가증권이었다. 우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대출금을 보면, 일본인 명의 법인, 단체, 개인에 대한 각종 대출로서 상업대출과 산업대출, 공공대출을 합쳐서 12억엔 수준으로 식산은행의 대일 재산 총액의 67%를 차지했다. 12억엔의 대출금 중에는 상업대출이 6억엔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대출이 4억엔, 공공대출이 2억엔 규모로 그 뒤를 이었다.

대출금 다음으로 규모가 큰 것은 국채와 사채(社債), 주식으로 구성된 유가증권으로 5억 7,000만엔 수준이었다. 대부분은 국채가 차지하여 5억 4,000만엔이었고, 나머지는 사채와 주식이 비슷한 비중이었다. 유가증권의 경우 현물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일본지점에 보관하고 있던 채권에 대해서는 도쿄 및 오사카 지점장 명의의 보관증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 일본 도쿄 및 오사카 지점에 보관된 유가증권이 5억엔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발행된 국채의 대부분이 일본 양대 지점에 보관되었기 때문이었다. 1,600만엔 정도인 사채(社債)의 경우 보관 비중이 비슷했고, 1,700만엔 규모의 보유 주식산은행 1,400만엔이 국내에 보관되어서 국채와 반대 양상을 보였다. 아마도 국채의 경우 일본채권시장에서 인수하였고, 국책·군수회사 출자가 대종을 이룬 주식의 경우 국내 일본인 기업에 대한 출자 및 주식담보대출이 많았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식산은행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경우 세부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유가증권 보유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채의 경우 5억 7,000만엔 중 3억엔 이상이 태평양전쟁 및 중일전쟁 등의 전비 마련을 위한 전쟁 국채였다. 사채 1,600만엔의 경우도 태평양전쟁 발발 후인 1942년 군수·국책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목적으로 일본 대장성(大蔵省)이 주도하여 설립한 특수금융기관 전시금융금고(戰時金融金庫)의 금융채권 760만엔 어치를 인수한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리고 이어서는

일본계 유가증권(국채 및 사채) 명세서

구분	종류	단	액	비고
국채	조폐회 공채		2,400만	
	조폐회 공채		8,875	
	조폐회 공채		19,000	
	조폐회 공채		7,779,215	
	조폐회 공채		31,411,200	
	조폐회 공채		161,229,450	
	지식자본 국고채권		30,437,610	
	국립국고채권		700	
	국립국고채권		29,080	
	비동기권장 국고채권		275,647,630	
	국립국고채권		1,498,600	
	국립국고채권		202,430	
	자금(資金)국채		3,535	
	지국채		18,873,936	
	후환지급 증서		5,100	
	스케		523,854,856	
	합계		11,712,251,611	
합계			539,368,372.61	

【그림 3】소유 국채의 세부 내역(DA0423463)

전시저축채권이 540만엔을 차지했다. 주식의 경우 대출담보로 보유한 주식이 1,300만엔 규모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외에 계열 자회사로 일제강점기 전국적으로 방대한 농지를 소유하고 지주경영을 하던 농업회사 성업사(成業社)와 해동흥업(海東興業) 주식 등의 소유 주식 규모가 300만엔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식은 보유 대일재산 자료 정비에 관한 토의 기록〉은 조선식산은행이 보유한 대일 재산의 정비 방법 및 이를 토대로 한 정부 보상금 산출 방식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과 식산은행 청산위원회가 논의한 경과를 정리했다. 논의는 양 쪽 과장급 실무자 선에서 1966년 1월 14일부터 시작하였다.

양 쪽 기관의 논의 결과를 보면 크게 식산은행 대일 재산에 대한 보상금 산출방법, 대일 부채의 처리방법, 보유한 대일재산 현물자료의 정비방법 등이 결정되었다. 우선 대일 재산에 대한 보상금 산출 방법에 대해서 보면 부동산과 동산, 유가증권은 원칙적으로 1945년 8월 9일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다. 대일 부채의 경우는 귀속재산 처리를 결정했던 미군정 법령 33호 및 정부 수립 후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한국과 미국 간의 최초협정에 따라 정부에 귀속되었던 것을 근거로 이번의 대일재산 보상 문제와는 별도로 취급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대일 부채는 귀속재산으로서 정부로 이관하는 방법을 별도로 강구하기로 하였다.

식산은행이 보유한 현물자료의 정비와 관련해서는 보상청구 재산범위에서 제외할 대상들을 선별한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유가증권의 경우 해방 당시 일본지점이 보유하고 있어서 현물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증권을 보상대상 재산에서 제외하기로 하였고, 가장 비중이 높은 대출금의 경우도 부동산 담보 대부는 담보 부동산이 정부에 귀속되었음으로 분리하여 별도로 취급하기로 하였다. 일본에 소재한 식산은행 재산에 대해서는 1949년 12월 당시 금융조합연합회 부회장 하 모씨가 일본에 가서 조사하여 보고한 「대한민국 금융기관 소유 대일채권 처리 상황 조사 보고」 중에 첨부되어 있는 식산은행 일본 지점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각 항목별로 식산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현물을 첨부·제출하기로 하였다. 해당 재산의 현물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의 판단에 일임하기로 하였다. 한편으로 식산은행 대일 재산의 보상 재원의 조달은 한일협정으로 정부가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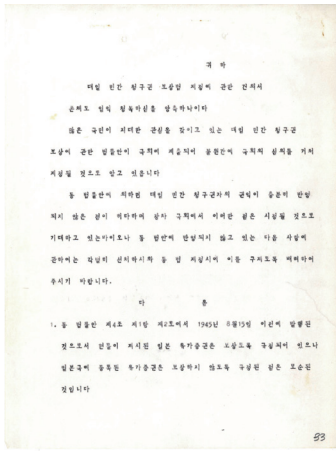
으로부터 받게 된 무상 3억불 외에 귀속재산 상당액을 포함하여 그 안에서 조성해야 할 것이라는 점도 합의했다.

이 문서들은 한일협정을 계기로 식산은행 청산위원회가 조선식산은행이 보유한 대일 재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근거로 정부에 보상액을 청구하기 위한 초기 작업을 보여준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산업정책 및 산업자금 조달의 창구였고, 스스로 20개가 넘는 회사와 금융기관을 거느리면서 이른바 ‘식은콘체른’의 모기업이자, 특수금융회사였던 조선식산은행의 해방 후 청산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아울러 전시 체제가 이후 활발해지는 식산은행의 국책·군수금융 규모와 실체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전시 자금동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

II. 민간주주들의 동향 관련 문서

한일협정에 의거해서 식산은행 대일 재산에 대한 보상의 길이 열리게 되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은 식산은행의 한국인 민간주주들이었다. 이와 관련한 문서들이 〈민간주주 대표 9인 위원회의 경과기록〉, 〈식은 보유 대일청구권 보상에 관한 식은 민간주주의 요청사항〉, 〈대일민간청구권 보상법 제정에 관한 건의서〉, 〈민간청구권 자협의회 공개 질문서〉, 〈민간청구권자협의회 회보 제1호(1968.10.3)〉이다.

우선 〈민간주주 대표 9인 위원회의 경과기록〉은 1966년 6월 10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친 모임과 여기서 논의 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6월 10일 모임은 최초 모임으로 보이며, 여기서 ‘한국식산은행 민간주식 보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대표자를 선출했다. 아울러 대일 재산에 대한 보상 비율을 산정(대일 재산 1엔에 대하여 원화 3.24원으로 산정)하여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고, 아울러 건의 내용에 부합되는 보상법안을 자체적으로 작성할 것을 결의했다. 이미 재무부에서 작성한 보상법안과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보상법안을 입수하여 참조로 하며 이를 토대로 초안한 건의서를 가지고 1주일 뒤에 다시 모이기로 하였다. 그러나 모임은 계획보다 앞당겨져서 1차 모임 4일 뒤인 14일 개최되었고, 여기서는 건의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림 4】 민간주식 보상대책위원회 건의서 부문(DA0423463)

민간주주 9인을 주축으로 한 모임인 ‘한국식산은행 민간주식 보상대책위원회’가 대책회의를 거쳐 마련한 건의서가 <대일민간청구권 보상법 제정에 관한 건의서>이다. 우선 건의서 서문을 보면 보상대책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인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안」(1966년 3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에 대하여 동 법률안이 대일민간청구권자의 권익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요 5항목의 요구사항으로 구성된 건의서의 주요 내용은 보상대상 대일 재산에서 제외된 재산들에

대해, 정부가 주장하는 제외 사유들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이들 제외된 재산들을 보상대상 재산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것과 일본 엔화에 대한 원화의 보상 비율을 보다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별도의 문서인 <식은 보유 대일청구권 보상에 관한 식은 민간주주의 요청사항>에는 식산은행 민간주주들의 요구 사항이 정리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1. 보상대상 재산에 있어서 다음 재산을 포함할 것.
 - 가. 등록 국채
 - 나. 식산은행 재일지점의 자산 자체
 - 다. 일본국에 본점을 둔 법인의 주식
 - 라.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다음의 채권
 - ① 일본인 및 일본인이 전액 출자한 법인단체에 대한 대출금
 - ② 일본에 소재하는 타 은행과의 환거래 차액
 - ③ 일본계은행 대리점 계정
 - ④ 한국에 소재하였던 일본계 은행의 청산계정
 - ⑤ 외자금고 이자 미수금
2. 보상금의 평가는 일본 화폐 1엔에 대하여 대한민국 원화 3,24원의 비율에 의할 것
3. 이 보상금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면세할 것.

민간주주들이 보상대상 재산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한 가장 큰 관심 대상은 식산은행 일본지점에 보관되어 있던 유가증권이었다. 앞서 서술했지만, 유가증권은 부동산을 제외한 식산은행 대일 재산 18억엔 중 5억 7,000만엔으로 이 중 5억엔 정도가 일본 도쿄 및 오사카의 식산은행 지점에 보관되어 있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실제 현물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등록하는 ‘등록 국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 말기인 1944년부터 일제가 국채 현물은 일체 발행하지 않고 막대한 액수의 등록 국채를 민간에게 소화시킨 것을 배경으로 하였다. 민간주주들은 현물이 제시된 일본 유가증권은 보상하도록 하고 일본국에 등록된 유가증권, 즉 식산은행 일본지점에 등록되어 있는 유가증권은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한 결정이 모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등록 국채는 예입된 현금과 같은 것으로 막대한 수량의 국채 현물을 휴대·보관하는 대신 지정된 금융기관에 등록(예입)한 것임으로 등록국채는 국채 현물 보다 더욱 확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환을 원으로 바꾼 1962년 6월 화폐개혁 당시에도 금융기관에 예입된 화폐(예금)는 우선적으로 취급된 사실이 있다는 것도 그들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국회 심의 중의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안」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일본국에 본점을 두고 일본국에 소재한 일본 금융기관에 예입한 예금은 보상대상 재산으로 책정되고 있는 만큼 일본국에 소재한 금융기관에 등록(예입)된 국채도 당연히 보상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 외에도 식산은행 일본 지점 재산을 해방 당시의 기준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이후 폐쇄기관으로 청산 절차를 마무리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보상 비율과 관련해서는 일본엔 360엔에 대하여 한화 270원의 비율 — 환산하면 1엔 당 0.76원 — 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최소한 그 4배 정도인 1엔당 3.24원의 비율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는 당시 일본 정부로부터 받게 된 무상 3억불이 대일청구권 금액 250억엔에 대한 달러 환가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1엔의 원화 환산은 3억불을 당시 달러환율인 1달러 당 270원으로 환산하여 원화를 계산하고, 이것을 250엔으로 나눈 가격인 3.24원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선식산은행의 한국인 주주들이 대일 재산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1966년, 비슷한 상황의 대일청구권자들이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어 동일한

요구를 정부에 개진하기 시작했다. 이들에 의해 1966년 6월 10일자로 설립된 전국 조직이 '민간청구권자협의회'로 <민간청구권자협의회 공개 질문서>, <민간청구권자협의회 회보 제1호(1968.10.3)> 문서는 이 협의회의 자료이다. 우선 <민간청구권자협의회 회보 제1호(1968.10.3)>는 1966년 이후 1968년까지 대일 재산 보상과 관련한 그 동안의 경과를 알 수 있는 문서이다. 앞서 언급한 식산은행 민간주주들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보상 대상 대일 재산의 범위 선정 및 보상 비율에 불만을 나타내어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었고, 보상법을 심의한 당시의 6대 국회 역시 동 보상법이 ① 국민의 재산권 침해, ② 머리만 있는 법, ③ 법 전체에 결함이 많다는 등의 법사위 지적과 함께 자동 폐기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민간청구권자협의회는 정부가 제출한 보상법안이 6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 새롭게 7대 국회가 개원한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일 재산에 대한 보상관련 움직임이 정부나 국회에서 전혀 없음을 물론, 전국적으로 대일 재산을 가진 민간청구권자의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점을 규탄하고 직접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민간청구권자협의회는 1968년 1월부터 전국 민간청구권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8월말 현재 60%의 조사를 마쳤고, 10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아울러 이 회보에는 그간에 민간청구권자협의회가 전개한 사업의 개요, 정부, 국회 등에 올린 건의문과 호소문, 제안·청원한 관련 법안, 그들이 조사한 전국 민간청구권자의 명단 등이 게재되어 있다.

<민간청구권자협의회 공개 질문서>는 민간청구권자협의회가 1968년 11월 11일자로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올린 공개 설문서이다. 앞서 소개한 협의회 회보는 이 공개 설문서에 참고자료로 첨부한 것이었다. 설문서는 대일 재산의 정부 보상 문제에 대한 생각을 묻는 것으로 그간 민간청구권자와 정부 간에 대립각을 세웠던 보상대상 재산의 범위, 보상 비율, 보상법 제정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입장을 묻는 것과 함께 보상방법에 대해서도 민간청구권자협의회가 주장하는 안에 대한 견해를 요구하고 있다. 민간청구권자협의회가 주장하는 보상방법은 소액의 경우 현금지급하고, 고액은 일부 현금과 보상채권(이자 산정) 발행 또는 정부 주권(株券) 및 국가소유 토지(화폐 증발 억제 방안) 등으로 일시불로 지급하여 청산하는 것이었다.

III. 대일민간청구권 보상법안 관련 문서

1966년 3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상법안 및 법안 개요, 관련 수정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문서철 중에 <독립유공자 및 대일민간청구권 보상법안>, <독립유공자 및 대일민간청구권 보상법안(수정안)>을 중심으로 <민간인 보유 대일청구권관계 재산에 대한 보상조치안>, <대일재산 청구권에 대한 보상법(안) 개요>, <대일민간청구권 보상법안 수정 조문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한다. 아울러 보상법안 제정의 참고 자료로 귀속재산 관련 이전 협정 및 법령들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의 보충>, <군정법령 제33호>, <긴급금융조치법>도 편철되어 있다. 이 중 한일협정 조인 이듬해인 1966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다가 민간청구권자들의 반발과 국회 여야의 대립 속에서 자동 폐기된 대일민간청구권 보상법안의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독립유공자 및 대일민간청구권 보상법안>

제1조 이 법은 국가의 독립에 유공한 자와 애국지사(이하 독립유공자라 한다) 및 그 유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청구권 자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 정부 및 일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하 대일민간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부가 이를 보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 정부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 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정한다.

2. 전항의 사업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범위와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원호처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제3조 1.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독립유공자 사업기금 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회라 한다)를 둔다.

2.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기타의 위원은 관계 부처의 장과 학계, 언론계, 법조계의 인사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기금운용위원회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1. 정부는 이 법 시행 당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에 주소로 둔 대한민국 국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제1호,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것은 1945년 8월 16일 이후의 것도 포함한다)에 보유한 대일민간청구권으로서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것(이하보상

대상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증거가 확실한 것에 한하여 이를 보상한다.

다만 대일민간청구권의 보유로 인한 일체의 과실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가) 구 군정법령 제57호(일본은행권, 대만은행권의 예입)의 규정에 의한 지정된 금융기관에
의 예입금과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다음의 일본 통화

- ① 일본은행권
- ② 일본정부의 소액지폐

(나)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서 현물(일본국에 등록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제시된 다음의 일본 유가증권. 다만 이표는 제외한다.

- ① 일본정부가 발행한 국채
- ② 일본저축권
- ③ 일본저축채권과 보국채권
- ④ 일본국의 지방채(도, 부, 현, 시가 발행한 채권)
- ⑤ 일본국에 본점(본사와 본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 일본정부 투자기관이 발행한
사채와 일본정부가 보증한 사채

(다) 일본국에 본점을 두고 일본국에 소재한 일본 금융기관에 예입한 예금

(라) 1945년 8월 15일부터 1947년 8월 14일까지의 일본국으로부터 귀국한 대한민국 국민이 귀
국시 일본정부기관에 기탁한 기탁금

(마) 대한민국 또는 일본국에서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생명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와 수
취하게 된 보험금

(바) 한국에 본점을 둔 법인의 재일지점 재산(청산 종결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을 말
한다)에 대한 한국인 주주 기타 출자자의 지분

(사) 일본국에서 예입 또는 납입한 일본정부에 대한 다음의 채권

- ① 우편저금과 진채저금
- ② 간이생명보험과 우편연금의 납입금

(아) 전항의 보상 대상 재산에 대한 보상금액의 법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보상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대일민간청구권 보상
처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6조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재무부장관이 되고, 기타의 위원은 관계 부처의 공무원, 금융기관의 임원과 기타
학식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가) 대일민간청구권의 보상 적부 심사와 그 결정
- (나) 보상계획의 수립과 그 실행에 대한 검토
- (다) 보상업무 집행에 따르는 절차의 제정
- (라) 기타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업무 처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1. 위원회는 업무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또는 법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하거나 증언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력이 있는 자로 하여금 감정, 기타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업무 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기타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위원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1. 위원회의 업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 소속하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의 조직, 직원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1. 보상대상 재산을 가진 재(상속인을 포함한다)가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 청구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와 함께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 기타 증거에 미비한 것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보상의 여부와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1. 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재심사하고 그 결정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일본 원화에 대한 보상금 평가는 보상금액 결정시의 일본 원화와 대한민국 원화와의 교환비율에 의한다.

제15조 위원회는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액이 결정된 때에는 연차별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 정부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 보상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매연도의 보상금액을 청구권 자금관리 특별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초년도와 익년도에는 연차별 보상계획에 불구하고 필요한 보상금액을 계상할 수 있다.

제17조 1. 정부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내에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것은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2. 정부는 전항의 보상금을 보상대상재산의 종별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1.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조 제1항의 범위 안에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금액을 액면으로 하는 무이자 대일청구권보상증권(이하 보상증권이라 한다)으로 일시지급하거나 정부소유주식으로 보상금 지급기간을 단축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전항의 보상증권은 전액을 등록채권으로 발행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내에 분할하여 상환한다.

3. 보상증권의 발행과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 지급기간을 단축하여 정부소유주식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상금액을 감할하여 지급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소유주식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그 주식의 평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위원회는 업무 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소멸된다.

제21조 정부가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부소유주식에 대한 배당금과 제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공제하여 지급한다.

제22조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자와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자

2.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제4조 제1항 제2호에 제기하는 유가증권을 국외로부터 반입한 자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양도 양수한 자

제23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전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4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동 법안은 보상 대상자들로부터 보상대상 재산의 범위가 불합리하고, 보상비율이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보상해야 할 독립유공자와 물질적으로 보상해야 할 민간청구권자를 혼동한 법안이라고 하여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동 법안의 제정 움직임은 식산은행에 있어서도 민간주주들이 한국식산은행 민간주식 보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게 하였고, 전국적으로도 대일 민간청구권자들이 ‘민간청구권자협의회’를 결성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논란이 일자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동 법안을 수정하여서 독립유공자 관련법과 민간청구권 보상법을 분리하여 별도로 법안을 제정하려고 하였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민간청구권 보상법안의 준비 입법으로 ‘신고안’까지 만들었으나, 결국 청구권자들의 반발과 국회 내에서도 여야간의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여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IV. 관련 신문 기사 모음

이 문서철의 말미에는 대일민간청구권 보상법안과 관련한 당시 각종 신문의 기사들이 스캔되어 있다.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대두한 대일민간청구권 보상과 관련한 전체적인 전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스캔 기사의 제목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대일민간청구권 보상법안 관련 신문기사 리스트

기사제목	일시	게재 신문
조선은행 주식보상 촉진 대책위원회 위원장에 趙俊鎬씨	1964.2.15	서울신문
유창렬 의원 삼성재벌 경제파괴 지적	1964.2.21	경향신문
청구금조 15억, 배상금조 12억불로, 기본조약체결 선행케, 일본측에서 陳謝하면 신축성 용의	1964.2.22	조선일보
귀속휴면법인재산 사용자에게 알리는 말씀	1964.11.12	서울신문
한일협정 전문	1965.6.23	한국일보
결의문	1965.8.3	한국일보
한일국교정상화대책 27개 법제 조치에 합의	1965.8.3	서울경제신문

기사제목	일시	게재 신문
청구권 5억불 개발에 중점투자	1965.8.19	서울경제신문
청구권자금 관리 특별회계법안 의결	1965.8.20	한국일보
청구권 관리위 내주 첫 회합, 사업별 자금계획 검토	1965.8.27	서울경제신문
청구권 민간보상 대상 13개 종목으로, 보상조치법안 곧 경제 각의에 상정	1965.9.2	조선일보
대일청구권 관리위원 정부, 민간 대표10명 위촉	1965.9.9	서울경제신문
청산권 관리위 기능과 성격	-	-
민간인 보유 대일청구권관계 재산 58억원 보상방안 마련	1966.1.10	중앙일보
비율에 따라 안배토록, 조선은행청산국에서 청구권보상에 건의	1966.1.12	서울경제신문
1일부터 청구권법안 심사, 야당의 수정방침으로 논란예상,	1966.1.31	서울신문
청구권자금 관리법안 민중당서 대안제출	1966.1.31	경향신문
재경위 청구권법안 심사착수	1966.2.2	서울신문
민간보상 하겠다. 장부총리 청구권운영에 언명	1966.2.3	조선일보
청구권자금관리법 전문	1966.2.13	서울경제신문
재무부 인사	1966.3.6	한국일보
日貨 360圓에 270원 비율, 정부, 여당 청구권 민간보상법안 검토	1966.3.8	서울신문
청구권자금 중 민간보상대상, 일본통화, 유가증권, 예금 등	1966.3.18	한국일보
식산은행청산위에 보상토록 판결, 경춘선 국유화를 둘러싼 보상금 청구소송	1966.3.20	동아일보
경춘선 소송 정부가 패소, 식산은행에 4억여원 보상토록	1966.3.20	조선일보
민간보상법안의 문제점	1966.3.22	서울경제신문
민간보상법안 국회제출, 어제 각의 의결	1966.3.23	서울경제신문
독립유공자 및 대일민간청구권보상법안 전문	1966.3.23	한국일보(호외)
국공유재산 가격 현실화	1966.3.29	서울경제신문
되살아나는 조은, 식산은행, 대일청구권 민간보상 실현을 계기로	1966.4.16	경향신문
‘血債’도 현실화하라, 민간청구권보상법안의 국회상정을 보고, 너무 독선적인 평가	1966.4.26	조선일보
대일민간채권 보상을 현실화, 민중당 대안마련	1966.6.16	조선일보
보상대상 확대에 난색, 김재무장관 재경위에서 민간보상법안에 답변	1966.7.8	서울경제신문
구조선은행 주주들 반발, 일확천금 뒤통수도	1966.7.9	경향신문
한미행정협정 전문	1966.7.9	조선일보
민간보상 1억67만달러, 조선은행청산위 과소책정에 반발	1966.7.10	한국일보

기사제목	일시	게재 신문
도표로 본 개발전략, 제2차 5개년계획안	1966.7.10	서울경제신문
민간보상청구	-	-
교환비율 倍數로, 민중당 대일청구권보상 수정안 제출, 해방전 쌀110가마 값이 현재 한가마 값으로 보상이라니	1966.7.11	경향신문
한미행정협정 그 문제점들	1966.7.14	조선일보
공정거래법안의 취지	1966.7.21	한국일보
금융계의 고질 제거될까.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6.7.21	서울경제신문
不正宣告特措法案(전문)	1966.8.31	한국일보
허점 드러낸 청구권자금 사용방안	1966.11.4	-
청구권 부문별 사용계획표	1966.11.4	서울경제신문
외자총액 8억 1,930만불 농어업 근대화에 집중	-	-
대일청구권 사용방안	1966.11.3	서울신문
대일청구권자금 8억불 사용시안을 마련, 수산, 농업에 중점투자, 10년간 분할사용을 원칙으로	1966.11.3	경향신문
청구권 민간보상 3,000만불 이내, 독립유공, 순민간 분리	1966.12.23	한국일보
청구권 2차년도 사용계획 8,100만불 원안대로 통과	1966.12.23	조선일보
직접 보상을 더 희망, 민간보상 80억원 중 39억원을 요구. 7억 배정설에 발끈.	1967.2.2	조선일보
대일민간보상 신고법안 통과, 독립유공기금법도 성안, 재경위 7억원으로 회관, 장학사업	1967.3.9	한국일보
3억 달러 어떻게 쓰나? 궁금한 대일민간청구권 보상문제	1967.8.16	조선일보
대일청구권 자금한도 민간보상금 지불촉구, 협의회에서 호소	1968.4.21	조선일보
대일민간청구권보상 특별법안 제출, 신민당 의원들	1968.5.24	서울신문

배석만(고려대학교)

| Chapter I |

18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서철 (한국식산은행청산위원회)

관리번호 : DA0424709

쪽 수 : 129

생산년도 : 1971년

생산기관 : 성업공사

이 문서철은 1971년 1월 법률 제2287호로 제정된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 그리고 1974년 12월 법률 제2685호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에 의거하여 국내 민간 및 법인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일본국 및 일본국민 · 법인에 대하여 가졌던 재산(채권) — "대일민간청구권"이라고 불렀다 — 을 신고하여 보상을 받게 됨에 따라 한국식산은행 청산위원회가 구 조선식산은행의 대일 재산(채권)을 조사 · 신고, 보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주요 문서는 청산위원회의 대일 재산 조사과정, 그 결과로 산정된 신고대상 재산의 현황, 재산 신고와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에 관한 기록 등이다. 그 외에 한국식산은행 청산위원회의 요청으로 한국산업은행 동경사무소가 조사한 전후 연합군최고사령부(SCAP)에 의해 진행된 조선식산은행 도쿄지점 및 오사카지점의 폐쇄 · 청산과정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1966년 식산은행 민간주주들이 보상요구를 위해 작성한 건의서와 이에 기반하여 정리한 식산은행의 보상대상 재산과 보상요구 금액도 참조자료로 첨부되었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받게 된 3억불로 정부가 대일 재산(채권)을 보유한 민간(법인 · 개인)에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길이 열리게 되자, 그 대상이 되는 민간청구권자들은 여기에 대응하여 활발하게 움직였다. 한일협정 이듬해인 1966년부터 이들은 전국적인 조직으로 민간청구권자협의회를 만들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각종 건의서, 요구서를 쏟아내었고, 정부가 입안한 보상법안에 대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반대의 목소리

를 높였다. 식산은행 역시 민간주주들을 중심으로 보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자체적으로 보상건의서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식산은행이 보유한 대일 채권을 정리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보상대상 재산을 가급적 제한하고, 보상비율 역시 최대한 낮게 설정하려는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민간청구권자들의 대립, 그리고 그것이 국회내에서 여야 정치권 사이의 정치적 이슈가 되면서 보상입법은 좌절되었고, 상당한 기간 뚜렷한 진전 없이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민간의 대일청구권에 대한 보상 문제에 전기가 마련된 것은 1971년 1월 보상을 위한 준비 법안으로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2287호로 제정되면서 부터였다. 이 법률은 장차 보상을 위해 그 대상이 되는 재산(채권)을 신고하여 정부가 이를 심의하여 승인하는 제도였다. 정부는 이렇게 신고되어 승인된 대일 재산(채권)에 한하여 장차 보상법을 제정하여 보상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보상법안은 재산 신고 후 약 2년이 경과한 1974년 12월 법률 제2685호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다.

이 문서철은 한국식산은행 청산위원회가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 및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여 구 조선식산은행 대일 재산을 파악하여 신고하고, 이후 보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주요 문서는 청산위원회의 조사과정, 신고대상 재산의 현황, 재산 신고와 이후 수리, 보상금 지급여부 관련기록 등이다. 그 외에 역시 신고 작업의 일환으로 한국식산은행 청산위원회가 한국산업은행 동경사무소에 요청하여 조사한 전후 연합군최고사령부(SCAP)에 의해 진행된 조선식산은행 도쿄지점 및 오사카지점의 폐쇄·청산과정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1966년 식산은행 민간주주들이 보상요구를 위해 작성한 건의서와 이에 기반하여 정리한 식산은행의 보상대상 재산과 보상요구금액도 참조자료로 첨부되었다. 문서철의 주요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업무에 관한 건〉

〈전후 재일 조선식산은행 東京지점 및 大阪지점의 폐쇄와 청산에 관한 조사보고〉

〈대일민간청구권 수리거부 결정통지서〉

〈대일민간청구권 수리거부 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서〉

〈대일민간청구권 신고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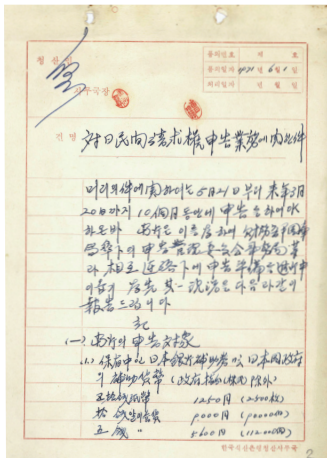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서〉

〈한국식산은행 민간주식보상대책위원회 대일청구권보상에 관한 건의자료〉

〈건의안에 의한 식은 앞 보상금액〉

I. 대일민간청구권 신고를 위한 준비관련 문서

1971년 1월 제정된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식산은행 청산위원회가 조선식산은행의 신고 대상 재산을 파악하여 신고하는 과정을 담은 문서들로 이 문서철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다.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업무에 관한 건〉, 〈전후 재일 조선식산은행 東京지점 및 大阪지점의 폐쇄와 청산에 관한 조사보고〉 등의 문서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림 5】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업무에 관한 건(DA0424709)

우선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업무에 관한 건〉을 보면 식산은행 청산위원회의 신고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같은 해 4월 17일자 재무부장관 명의로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공고」를 내었는데 여기서 신고기간은 1971년 5월 21일부터 1972년 3월 20일까지 총 10개월이었다. 식산은행 청산위원회는 이 일정에 맞추어 실무관청인 재무부 국고국 산하 ‘신고관리위원회’ 사무국과 상호 연락 하에 신고 준비를 진행하였다.

식산은행 청산위원회가 신고 대상재산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보유하고 있었던 일본화폐, 유가증권 현품이 중심이었다. 아울러 신고 작업의 일환으로 조선식산은행 일본 지점인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의 청산 정리로 발생한 잉여금 중 한국인 민간주주의 지분에 대한 조사도 시행되었다. 조선식산은행 일본 지점의 재산은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대상 재산 중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법인의 일본국에 있던 지점의 재산 정리로 인하여 생긴 잉여금 중 대한민국 국민인 주주의 지분’을 산정하기 위

한 것이었다. 청산위원회의 조사요청은 1971년 5월 7일자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물로 한 국식산은행 도쿄사무소가 5월 20일 올린 17쪽 짜리 보고서가 〈전후 재일 조선식산은행 東京지점 및 大阪지점의 폐쇄와 청산에 관한 조사보고〉이다. 그 내용은 SCAP에 의해 이루어진 일본 지점들의 폐쇄와 청산 과정에 대한 조사, 관련하여 수집한 조선식산은행 관련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보고서의 목차와 수집 자료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목차〉

一. 조선식산은행 도쿄지점 및 오사카지점의 소재지와 개설 연월

二. 조선식산은행 재일(在日) 지점의 폐쇄

- ① 폐쇄 경위
- ② 폐쇄기관의 정의
- ③ 재산의 취급 구분
- ④ 폐쇄의 효과
- ⑤ 폐쇄 당시의 식산은행 역원
- ⑥ 폐쇄 당시 식산은행 재일(在日) 지점의 재산상태
- ⑦ 폐쇄 당시 식산은행 본·지점의 종합재무상태

三. 조선식산은행 재일(在日) 지점에 대한 청산

- ① 폐쇄기관에 대한 특수청산
- ② 특수청산인 일본은행
- ③ 폐쇄기관정리위원회
- ④ 청산의 실태
 - － 자산의 처리
 - － 채무의 변제
- ⑤ 수지계산 상으로 본 청산실태
- ⑥ 폐쇄기관정리위원회의 해산과 그 후의 특수청산업무

〈수집자료 현황〉

- ① 재일 식은 점포 대차대조표
- ② 식은 본·지점 종합대차대조표
- ③ 자산의 환가 상황

- ④ 주식의 처리 상황
- ⑤ 환가 불능 자산의 내역
- ⑥ 채무의 변제 상황
- ⑦ 손익계산서
- ⑧ 폐쇄기관정리위원회 해산당시의 식산은행 재일 지점 대차대조표
- ⑨ 식은 주주 구성 비율
- ⑩ 식은 재일(在日) 지점 보유주식의 처분 상황

식산은행 청산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 도쿄사무소가 올린 자료를 토대로 도쿄와 오사카 양대 지점의 청산 후 발생한 잉여금에 대한 한국인 소유 지분을 산정하여 신고대상 재산 내역에 포함시키려고 하였다. 이 과정에는 최종적으로 정산 잔액에 대한 일본 대장성의 증명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난제로 부상하고 있었으며, 식산은행 청산위원회는 일본 소재 지점 재산에 대해서 같은 처지에 있는 조선은행, 조선금융조합연합회, 조선신탁주식회사의 청산위원회와 협의할 것을 구상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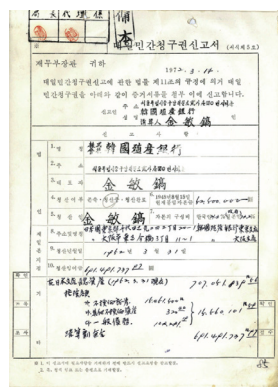
한편 신고과정에서는 신고대상 재산의 범위 설정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조선식산은행이 소유한 채권 외에 여신담보, 보호예수, 기타 일본권업은행, 삼화은행 등 일본 은행들의 대리업무 과정에서 보관 중인 채권을 신고 대상재산에 포함시킬 것인가가 논란의 중심이었다. 이들 채권이 조선식산은행이 보유한 채권 중 큰 규모를 차지하고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은 소각 및 기타 방법을 통해 폐기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1971년 6월 9일 식산은행 청산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문의를 재무부 산하 대일청구권 신고관리위원회에 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관리위원회는 11월 10일자 재무부장관 명의로 회신을 통해 이들 재산을 신고 대상재산에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통보했다. 이것은 이들 재산이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1945년 8월 15일 이전 일본국 및 일본 국민에 대해 가졌던 청구권이 아니라는 재무부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다.

신고절차가 복잡한 것도 신고과정의 애로 사항 중 하나였다. 아울러 신고절차의 규정에 의해 신고대상 재산의 현물 사본을 일일이 첨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절차 간소화를 위한 재무부 신고관리위원회 사무국과의 절충이 필요했다.

II.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와 이후 심의·보상금 결정 관련 문서

이 문서들은 1971년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식산은행 청산위원회의 신고서 및 신고 내역, 그리고 1974년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 여부에 관련한 것이다. 문서 건명은 <대일민간청구권 신고내역>,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서>, <대일민간청구권 수리거부 결정통지서>, <대일민간청구권 수리거부 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서> 등이다.

우선 식산은행 청산위원회가 재무부장관 앞으로 신고한 식산은행의 대일 재산 내역은 소유 유가증권, 일본화폐, 일본 지점 청산잉여금을 합쳐서 7억 1,000만엔이었고, 이 중 신고한 금액은 1억 5,479만엔이었다. 이것은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 중 ‘법인인이 소유하는 청구권 중 정부의 지분에 해당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것에 의거하여 식산은행의 정부 지분 78.2%를 제외한 민간지분만을 신고했기 때문이었다. 식산은행이 현물로 소유하고 있었던 유가증권과 일본화폐의 신고는 1971년 12월 16일자로 신고하였고, 일본 도쿄와 오사가 지점 재산청산 잉여금의 경우 신고마감이 임박한 1972년 3월 14일 신고하였다. 일본 지점 재산의 경우 확인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것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그림 6】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서 (DA0424709)

【표 8】 식산은행 대일민간청구권 신고 내역표

(단위 : 엔)

종별	대일 재산 금액	신고금액	신고일자	비고
유가 증권	국채	18,263,468	1971.12.16	
	사채	252,043		
	소계	18,515,511		
일본은행권, 보조화폐	28,450	6,202	1971.12.16	지폐 50전권 11,150엔, 동전 1전권 2,700엔, 5전권 5,600엔, 10전권 9,000엔
재일 재산 청산 잉여금	691,491,738	150,745,198	1972.3.14	1952년 3월 31일 현재 재일본 지점 총 자산 7억 700만엔 중 불환가 증권, 기타자산 및 일반채무 1,556만엔을 공제한 금액
합계	710,035,699	154,787,782		

식산은행 청산위원회가 대일 재산으로 산정한 7억 1,000만엔의 대부분은 일본 지점들의 청산잉여금이었고, 식산은행이 보유한 채권은 겨우 1,850만엔 정도가 계상되었을 뿐이었다. 1966년 최초 대일 재산 계산 당시 식산은행 청산위원회는 일본 소재 부동산을 제외하고도 순수 보유 채권만으로 18억엔을 계상하였으나 거의 인정받지 못한 셈이었다. 그 이유는 1966년 정리 당시 대일 재산에 포함시켰던 채권 중 현물이 없는 등록 국채, 일본 지점 보관 유가증권, 대부금 및 환거래, 기타 일본 은행들의 대리업무로 발생한 채권 등이 보상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었다. 1966년 당시 식산은행 민간주주들이 대책위원회까지 결성하여 강력하게 이들 재산의 보상 반영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액에 대하여 정부가 최종적으로 인정하여 수리한 금액은 이보다 훨씬 작았다. 신고한 1억 5,479만엔에 대하여 정부가 최종적으로 수리한 금액은 404만엔에 불과했다. 식산은행을 포함한 귀속 금융기관의 전체적인 신고내역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가장 많은 금액을 신고한 것은 금융조합연합회로 7억 2,585만엔, 다음으로 조선은행이 4억 8,049만엔이었고, 식산은행은 3번째로 많은 액수였다. 이러한 신고 재산 중 정부가 수리한 금액은 조선은행이 2,790만엔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식산은행이었다. 가장 많은 액수를 신고한 금융조합연합회의 경우 단 한 푼도 인정받지 못했다.¹⁷⁾

【표 9】 대일민간청구권 신고내역

(단위 : 엔)

신고기관	신고일자	신고대상	신고일자	신고금액		수리금액
				정부지분 포함	정부지분 제외 (실제 신고액)	
조선은행	1972.3.9	청산잉여금 외 5건	1971.12.16	2,092,180,271	480,490,121	27,901,868
식산은행	1971.12.16	국채 외 3건		710,035,698	154,787,781	4,042,583
조흥은행	1972.3.14	국채 외 1건		4,492,882	4,204,888	3,005,471
상업은행	1972.3.13	저축권 외 2건	1971.12.16	3,265,643	2,320,565	2,090,977

17) 수리금액은 신고 당시 신고를 거부한 금액이 아니고, 신고 접수된 금액을 이후 보상법 제정과 관련하여 정부가 재차 확인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보인다. 재무부가 1978년 5월에 발행한 『대일민간청구권보상 종결보고서』는 신고 당시 신고가 거부된 액수를 제하고 최종적으로 신고된 액수를 16억 2,631만원으로 기록하고 있다.(33쪽) 그리고 그 중 금융기관금융기관 신고액이 14억 3,635만엔이라고 하였다(40~41쪽)

신고기관	신고일자	신고대상	신고일자	신고금액		수리금액
				정부지분 포함	정부지분 제외 (실제 신고액)	
한일은행	1972.2.23	우편저금 외 3건		516,157	501,584	364,923
구 신탁재산처리 위원회	1972.2.11	국채 외 3건		9,207,111	184,142	184,142
금융조합연합회	1972.3.18	청산잉여금		725,845,228	725,845,228	0
농업협동조합	1971.8.19	국채 외 1건		96,270	96,270	96,270
수산업협동조합	1972.3.18	군정57호 외 2건		978,544	978,544	978,544
합계				3,547,850,877	1,369,862,754	39,145,066

〈주〉 엔 이하 금액은 생략했음

1974년 12월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75년 7월부터 보상이 실시되게 되었지만, 식산은행은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앞서 언급했지만, 전체 신고금액 중 금융기관이 신고한 금액이 거의 90%에 이르렀다는 점이 보상에 소극적이었던 정부의 입장에서 식민지 수탈기관에 대한 보상 보다는 개인청구권에 치중하라는 민간청구권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통해 명분을 얻고, 여기에 근거하여 이들 금융기관을 보상에서 제외하는 정책 결과로 나타난 것이었다.

식산은행의 보상 제외는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규정되어 있었다. 동 문서철에는 1975년 6월 14일자 재무부장관 명의로 식산은행 청산사무국에 보낸 보상대상 제외 통지서가 첨부되어 있다. 내용은 ‘귀행에서 신고한 대일민간 청구권에 대하여는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신고수리여부가 확정되었으나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권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통보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그 외에 동 문서철에는 식산은행 청산인 앞으로 보낸 대일민간청구권 수리거부 결정통지서도 첨부되어 있다. 식산은행 청산사무국에 6월 25일자로 접수된 이 통지서는 신고 재산 중 보유 일본화폐 28,450엔에 대한 것이었다.

19

대일청구권 자료표 (한국식산은행 청산사무국)

관리번호 : DA0424710

쪽 수 : 123

생산년도 : 1971년

생산기관 : 성업공사

이 문서철은 1971년 1월 법률 제2287호로 제정된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식산은행 청산위원회가 식산은행의 대일 재산을 재무부에 신고하기 위하여 일련의 재산 조사 결과를 자료표로 만든 것이다. 말미에는 1970년 12월 정부의 법안 상정과 국회 재정경제 위원회의 심의과정을 통한 수정안, 그리고 확정된 법안 등이 첨부되어 있다.

1966년 이후 장기간 논란이 되어왔던 국내 민간(개인·법인)의 대일 재산에 대한 보상 문제는 1971년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동 법은 보상을 위한 준비 단계로 민간청구권자가 소유한 대일 재산을 재무부에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식산은행 청산위원회도 여기에 대응하여 신고를 위한 대일 재산 현황 파악을 실시하였다. 이 문서철은 1971년 5월부터 식산은행 청산위원회가 실시한 대일 재산 조사 작업을 정리한 문서로 <대일청구권자료표>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다. 작성자는 주식회사 한국식산은행 청산사무국이다. 동 자료표는 1966년 최초 보상법 제정 움직임이 있을 때 작성했던 대일 재산 현황표를 기본으로 해서 이것을 수정하여 완성하였다.¹⁸⁾ 식산은행 소유 대일 재산 현황의 시점은 1970년 11월 30일이다. 수정과정의 문서도 같이 첨부해서 최종적으로 수정된 수치가 나오게 된 정황도 파악할 수 있다. 1966년 작성된 재산 현황과 비교하여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18) 1966년 조사는 『대일재산관계 자료철 (한국식산은행청산사무국)』(DA0423463)에 포함되어 있다.

【표 10】 조선식산은행 대일 재산(채권) 현황

(단위 : 엔)

종별	금액		내용 및 재산권의 근거
	1966	1970	
유가증권	568,643,086	556,095,660	일본지점에 보관했던 유가증권과 합산한 금액. 당행 보유 현물이 있으며, 일본지점 보관 증권은 일본지점장 명의의 보관증이 있음.
대부금	1,182,369,215	1,182,369,215	일본인 명의 법인, 단체, 개인 앞의 대부금. 차주 발행어음, 저당권설정계약서, 담보물건, 기타 관계장부를 보유하고 있고, 별도 차주별 명세도 보관하고 있음.
환거래	3,373,413	3,373,413	재일본 각 은행과의 환거래 상 발생한 것. 당행이 상대은행 앞으로 청구하는 금액이며, 관계장부 및 서류를 보유 (각 계좌수별 명세도 별도 보유)
三和은행 관계	39,827,526	39,827,526	미군정 명령에 의해 인수한 三和은행 경성지점의 인계 차액. 三和은행 경성지점과의 인계서를 보유
일본권업은행 대리업무	21,924,486	21,924,486	일본권업은행 대리업무 취급상 발생한 청구금액. 일본권업은행과의 문서 및 대리업무 취급서류를 보유
기타	523,828	523,828	일본인에 대한 대부금 관계 입체금이며, 개인별 명세 별도 보유. 실물은 한국전쟁시 분실함
합계	1,816,661,554	1,804,114,125	

〈주〉 1. 원 자료의 엔 이하 금액은 반올림하여 작성.
2. 금액은 해방 당시의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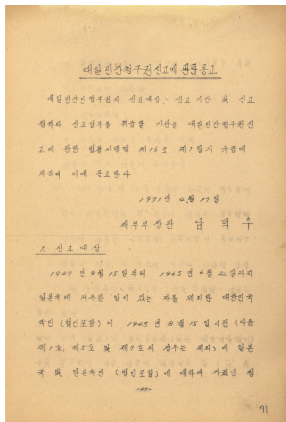
【표 10】에서 보듯이 ‘신고법’ 제정에 따라 식산은행 보유 대일 재산의 현황 조사결과는 1966년 조사와 크게 변동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1966년 5억 6,800만엔 수준이었던 보유 유가증권의 규모가 약간 축소되어 5억 5,600만엔대로 줄어든 것이 원인이었다. 보유 유가증권의 규모가 축소된 것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재확인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산은행이 소유한 일본 소재 부동산 명세는 별도로 정리하였는데, 그 현황은 【표 11】과 같다. 1966년 조사 내용과 비교하여 변동은 없다.

【표 11】 일본 소재 소유 부동산 명세

종별	면적(평)	소재지
대지	1,768	도쿄, 오사카, 미야기현(宮城県)
건물	350	도쿄, 오사카, 미야기현(宮城県)
임야	2,322	미야기현(宮城県)
火田	1,684	미야기현(宮城県)
동산	造付금고 1, 据付금고 5	도쿄지점 및 오사카지점

〈대일청구권자료표〉의 마지막에는 참고자료로 대일 재산 보상금이 1억원이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식산은행의 정부지분과 민간지분에 의거한 보상금액도 추정해 놓았다. 제세 공과금을 제외하고 민간 주주 앞으로 1,248만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즉 1억원에 대하여 법인세 3,500만원을 공제하면 6,500만원 정도가 남고, 이것을 정부와 민간주주가 지분에 비례하여 나누면 각각 5,062만원과 1,438만원이었다. 민간주주의 경우 여기에서 다시 원천과세액 190만원을 공제하고 1,248만원이 돌아간다는 것이었다.



【그림 7】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공고(DA0424710)

문서철의 마지막에는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이 첨부되어 있다. 1970년 12월 재무부에 의해 작성되어 국회에 상정되고, 이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사하여 수정한 법안, 그리고 이듬해인 1971년 1월 19일 법률 제2287호로 최종 공포된 법안이 함께 있어서 입안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변동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4월 14일 공포된 시행령, 이에 따라 대일민간청구권의 신고를 알리는 재무부장관 명의의 공고 등도 같이 첨부되어 있다. 문서철에 첨부된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와 관련된 법규는 다음과 같다.

1.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2287호, 1971년 1월 19일 공포)
2.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5596호, 1971년 4월 14일 공포)
3.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공고(재무부장관 남덕우, 1971년 4월 17일)
4.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안 조사보고서(국회 재정경제위원회, 1970년 12월)
5.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1970년 12월)
6.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안)(재무부, 1970년 12월)

정부는 최초 법률 입안 제안서에서 대일민간청구권의 정확한 자료 수집과 그 내용의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신고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정부 원안이 대체로 승인되었으며, 다만 시행시기가 한 달 정도 단축되었다. 즉 조속한 시행이라는 취지에서 정부 원안에 법안 공포 후 90일 경과 후 시행한다는 것을 국회 수정안에는 이를 60일로 단축했다.

배석만(고려대학교)

20

대일민간청구권 신고관계 서류철
(해동흥업공사)

관리번호 : DA0425703

쪽 수 : 224

생산년도 : 1975년

생산기관 : 성업공사

이 문서철은 조선식산은행 계열사였던 해동흥업의 대일 재산 신고 및 보상 과정을 알 수 있는 문서이다. 1971년 1월 법률 제2287호로 제정된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해동흥업공사 청산위원회가 해동흥업공사의 대일 재산을 재무부에 신고한 자료와, 1974년 12월 법률 제2685호로 제정된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한 대일 재산을 토대로 민간주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과 관련한 자료로 구성되었다. 해동흥업공사의 신고 재산은 국채와 사채를 합하여 37만 2,511엔이었고, 신고액 중 정부 소유 주식지분을 제외한 민간(법인 및 개인) 주식지분에 대하여 165만 300원을 수령하였다. 아울러 문서철에는 신고 및 보상 과정에서 증빙서류로 제공된 시기별 주주명부, 소유 국채 및 사채 명세표 등이 첨부되어 있다.

주식회사 해동흥업공사—이하 해동흥업—는 일제강점기 설립된 후지흥업주식회사(不二興業株式會社)가 1946년 3월 사명을 변경한 것이다. 후지흥업은 주지하듯이 조선식산은행의 계열사로 광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식민지 지주경영을 행하였던 대농사회사였다. 후지흥업은 1914년 4월 설립되었는데, 1934년 식산은행의 자회사 성업사(成業社)에 인수되어 식산은행의 손(孫)회사가 되었다. 역시 농업회사로 1931년 설립된 성업사는 1943년 후지흥업에 또 다른 계열 농업회사인 조선개척주식회사(朝鮮開拓株式會社)를 흡수·합병시켰다. 이를 통해 후지흥업은 일제시기 식민지 최대 지주회사였던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버금가는 대농업회사로 규모가 확장되었다. 일제말 후지흥업은 남북한에

걸쳐서 6개 농장(북한 2개, 남한 4개), 농지 1만 8,000정보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와는 별도로 임야 1만여 정보, 기타 동산,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었다. 일제 패전 당시 모회사인 성업사가 보유한 후지흥업의 주식산은행 11만 181주로 발행한 총 주식산은행 20만주의 55%에 이르렀다. 나머지 5만 9,009주는 23개 법인단체와 335명의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이 중 한국인은 20명 정도가 4,379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식산은행의 계열사로서 일본인이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경영을 독점했던 후지흥업은 해방 후 당연히 미군정에 의해 귀속재산으로 접수되었다. 미군정은 후지흥업을 접수하여 귀속법인으로 만든 직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인 이하 경영진을 개편하여 관리를 시작했다. 미군정에 의해 임명된 경영진은 1946년 3월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명을 해동흥업공사로 변경하였다. 해동흥업은 해방 후에도 일정기간 지주 경영을 지속하였으나, 미군정 말기의 귀속농지 불하와 정부 수립 후 농지개혁에 의거하여 소유 토지의 대부분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해동흥업은 토지매각 대금과 소유 부동산 경영을 중심으로 법인 청산에 들어가는 1973년까지 정부를 최대주주(귀속주식을 바탕으로 82.5% 보유)로 한 주식회사 체제를 유지하며 활동을 계속했다.

해동흥업이 해방 후에도 이름만 바꾼 상태에서 일제시기 체제를 장시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각한 토지의 보상금 수령과 관련하여 정부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한 법정 소송이 장기간 이어졌고, 한편으로 소유 부동산의 처리에도 이들 부동산이 전국에 산재해 있고, 복잡한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처리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동흥업 경영진 자체가 토지매각 대금으로 받은 보상금과 소유 부동산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전개해 보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도 기존 법인체제가 장기간 유지된 또 다른 이유였다.

이 문서철은 이러한 해동흥업이 1971년 1월 법률 제2287호로 제정된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소유한 대일 재산을 재무부에 신고한 자료와, 1974년 12월 법률 제2685호로 제정된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한 대일 재산을 토대로 민간 주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과 관련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해동흥업의 대일 재산 신고 및 보상 과정을 알 수 있는 문서이다. 이하에서는 이것을 대일 재산 신고에 관한 문서와 보상에 관한 문서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I. 대일 재산 신고 관련 문서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여 해동흥업은 1972년 1월 13일 대표이사 이○○(李○○)를 신고인으로 하여 재무부장관 앞으로 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동흥업이 소유한 대일 재산으로 신고한 것은 국채와 사채를 합쳐 37만 2,511엔이었다. 국채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35만 550엔이었고, 사채가 2만 1,961엔이었다. 모두 채권을 현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었다. 신고한 채권은 다음날인 14일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재무부 산하 대일민간청구권 신고관리위원회 사무국으로부터 받았다.

신고한 대일 재산 중 일본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1941년 3월 20일자로 취득한 것이었고, 사채는 일본 국책은행 중 하나인 일본권업은행이 발행한 저축채권과 전시보국채권으로 취득 일자는 국채 취득일과 동일했다. 해동흥업은 이 외에 일본 정부보증 사채로 도쿄도(東京都)식량영단과 중앙식량영단이 발행한 출자증권, 그리고 일본미곡주식회사가 발행한 신원보증금을 합하여 1만 550엔을 신고하였으나 접수되지 않았다. 이들 출자증권이 정부 보증 사채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신고서에는 신고한 금액을 증명하는 근거 서류들을 첨부하였다. 신고한 국채와 사채의 명세서 및 채권 현물의 사본 등이었다. 명세서를 보면 정부보증 국채의 경우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국고채권 총 428매였고, 사채는 저축채권 2,119매, 전시보국채권 270매였다. 해동흥업이 신고한 대일 채권의 전체적인 현황을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신고 대상 대일 채권 명세서

종별	매수	금액(엔)	비고
국채	428	350,550	
저축채권	2,119	19,360	
보국채권	270	2,601	
출자증권	14	10,550	신고대상에서 제외 됨
합계	2,831	383,061	

해동흥업의 대일 재산 신고 관련 문서에는 1947년 10월 현재 보유한 각종 유가증권의 명세서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보면 조선내 회사로 조선신탁주식회사,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다사도철도주식회사, 강원식산주식회사, 대동실업주식회사, 조선축산주식회사, 조선농기구제조주식회사, 경기도임산종묘주식회사, 조선목재주식회사, 경성신탄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대부분



【그림 8】 해동흥업 보유
중일전쟁 국채(DA0425703)

몇 백주의 소액이지만, 조선농기구제조주식회사의 경우 8,3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조선농기구제조의 경우 해동흥업의 모회사인 조선식산은행 주도로 식산은행의 계열 농업회사인 성업사, 조선개척주식회사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 출자하여 1940년 설립한 회사였기 때문에 대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이었다. 신고관련 문서철의 마지막에는 〈1958년 5월 10일 대일 자산배상 청구 자료표〉가 붙어있다. 1958년 5월 10일이라는 시점이 이 자료표를 만든 때인지, 아니면 자료표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시점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1972년 대일 재산으로 실제 신고한 채권 금액과 대조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다.

Ⅱ. 대일 재산에 대한 보상 관련 문서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해동흥업이 1972년 1월 13일자로 신고한 대일 재산 37만 2,511엔에 대한 보상은 신고한 이후에도 3년이 훨씬 지난 1975년 11월 26일자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1974년 12월 법률 제2685호로 제정된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이었다. 보상 방법은 신고한 금액 중 정부의 심사 결과 인정된 금액에 대하여 30배의 금액을 원화로 보상하는 것이었다. 물론 보상액 중 정부 소유지분에 대한 부분은 공제하고 민간주주 지분만을 보상했다. 해동흥업의 경우 165만 300원을 보상금으로 수령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계산된 것이었다.

$$372,511\text{엔} \times (\text{민간 소유 주식/총 주식}) \times 30$$

당시 해동흥업의 총 주식은 4만주였고, 이중 민간 소유 주식은 5,907주였다. 보상 받은 165만 300원은 역시 보상법 규정에 의해 현금 30만 300원과 보상증권 135만원으로 수령하였다. 보상증권은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았다.

【표 13】 보상증권 상환내역

(단위 : 원)

구분	상환일	원금	이자	비고
제1차 상환일	1976년 7월 1일	405,000	67,500	증권번호: 202639~202773
제2차 상환일	1977년 7월 1일	405,000	47,250	
제3차 상환일	1978년 7월 1일	540,000	27,000	
합계		1,350,000	141,750	

보상받은 금액을 민간주주(법인 및 개인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은 증권 수령분의 상환 완료시나 해동흥업의 청산 종결일로 하기로 하였고, 그때까지는 현금은 정기예금으로 증권수령분은 각각 서울은행과 한국은행에 등록 예치하였다. 회계 상으로는 현금은 가수금과 정기예금으로 처리하고 증권과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는 가수금과 유가증권으로 처리하였다. 아울러 동 문서철에는 보상금 수령과 관련하여 수령통지서 사본, 그리고 주주명부가 첨부되어 있다.

동 문서철에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재무부가 해동흥업에 요구한 자료보완 요청 문서도 첨부되어 있다. 이 문서들은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972년 신고한 대일 재산에 대해 1975년 실제 보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한번 더 정부 차원의 재심사와 그 결과에 따른 증빙자료 보완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해동흥업의 사례를 볼 때 이 재심사 과정은 매우 철저하게 이루어진 느낌이다. 이것은 정부가 귀속법인의 대일 재산에 대한 보상금액을 최대한 줄이려고 했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해동흥업의 신고 재산에 대한 재심사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재무부 대일민간청구권 사무국은 1974년 3월 신고 재산과 관련하여 1946년 3월말 현재의 해동흥업 대차대조표, 1971년 12월말 현재의 대차대조표, 그리고 1946년 3월말과 1972년 3월말 현재의 소유주식 분포상황 일람표의 제출을 요구했다. 해동흥업은 3월 14일자로 요구한 서류를 제출했다. 이듬해인 1975년 5월 6일자로 재무부 대일민간청구권

사무국은 다시 해동흥업에 대해서 신고한 재산에 대한 증거 자료제시를 요구했다. 요청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 ① 1972년 1월 대일 재산 신고일 이후 발급된 등기부 등본
- ② 1945년 8월 15일 당시 주주명부 및 주식지분 명세서
- ③ 청구권 신고일 이후 발급된 제세공과금 납부증명서

해동흥업은 재무부 청구권 사무국이 요구한 위의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자 청구권 사무국은 두달 뒤인 7월 3일 다시 공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자료 보완을 요청하고 있다.

- ①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1945년 8월 15일 당시의 주주명부(구성원 명부) 및 주식지분 명세서(분담금 명세서)
- ② 1945년 8월 15일 당시의 주주(구성원) 중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 호적초본)
- ③ 1945년 8월 15일 당시의 주주(구성원) 중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인에 대하여 위의 ①, ②항의 서류

여기에 대하여 해동흥업은 ①의 요구에 대해서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1945년 8월 15일 당시의 주주명부(구성원 명부) 및 주식지분명세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②, ③항의 자료보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일본인 소유주식과 한국인 소유주식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한국인에게만 대일 청구권 보상부여를 하고자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3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8.15 당시 주주들의 연락 장소에 불과한 주소지를 가지고 호적초본 및 증빙서를 첨부한다는 것이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고 하면서 이하의 답변으로 자료 보완을 대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① 당 회사는 1914년 4월 23일에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당시 일본인 소유 주식분과 한국인 소유 주식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일본인 주식만이 귀속재산 처리법에 의거하여 정부(재무부)에 귀속되고 그 후 1963년 자산재평가에 따른 자본 전입 및 주식 병합과 1965년 주식회사 성업사의 청산종결로 인하여 당 회사 성업사 소유 주식분이 자동적으로 정부(재무부)에 귀속 이관됨에 따라 현재 총 주식 4만주 중 정부 소유주식 34,093주(주식 소유비율 85.23%)를 정부(재무부 출자관리과)가 소유하고 있음.

- ②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등의 차질 없이 매회 결산 주주총회에 의거하여 정부 소유주식에 대한 주식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예산 및 업무 감독을 재무부 출자관리과로부터 받고 있음(예 : 1973년 배당금 지급실적표 별첨).
- ③ 이상과 같이 당 회사는 다른 일반기업체와 달리 정부관리기업체이며,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일본인 소유 주식과 한국인 소유 주식이 명확히 구분되어 일본인 주식에 대해서는 귀속재산처리법에 의거, 정부에 귀속되었음은 물론 하등의 의문점이 없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업무감독을 받고 있는 기업체로서 만약 일본인 소유 정부귀속 지분이 잘못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지금에까지 매해 결산총회에 의한 주식 배당 및 법인세 납부 등 많은 차질을 초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바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①항의 요구사항에 의거 별첨 제출한 1945년 8월 15일 당시 일본인 소유 주식분과 한국인 소유 주식분의 주주명부가 명확하다는 것을 제차 말씀드리며 또한 이를 증빙하기 위해 1968년도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정부 소유주식 증명서를 첨부 제출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흥업은 이와 같은 답변서와 함께, 관련 서류로 1973년도 주주배당금 지급실적표, 정부 납부영수증 사본, 1968년도 재무부장관 명의를 정부 소유주식 증명서, 주주명부 및 주식지분명세서, 그리고 이에 대한 공증서 등을 첨부했다.

배석만(고려대학교)

